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

——한글의 구조상의 특색, 기입의 형식,
배열, 표기법 문제 등과 관련한 고찰——

이 재 철★

〈목 차〉

- | | |
|---|-----------------------------------|
| I. 서 론 | V. 된소리의 배열방식을 달리하는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 |
| II. 표의 구조론과 구분성 문제 | VI. 독법 또는 표기를 달리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점 |
| III. 저자기호표 작성을 위한 빈도조 사의 대상어 선정 문제 | VII. 결 론 |
| IV. 목록기입에서 동양인명의 성명간 에 룸마를 찍는 문제와 이에따 른 저자기호표의 구조의 문제 | |

I. 서 론

도서기호법¹⁾은 동일한 분류항목내의 각 도서에 대한 배열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기호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막바지 항목(ultimate class)내에 두개이상의 도서가 모일 때, 또는 이를 예상하여, 이들간을 서로 개별화(individualise)하는데 쓰이는 기호법인 것이다.²⁾ 이러한 개별화법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수입순(受入順)의 기호법이고 후자는 저자순과 출판년대순의 기호법이다. 여기서 간접적이라 함은 동일한 분류항목내의 문

★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

1. Henry Evelyn Bliss는 “도서기호”(book notation, book mark 또는 book number)란 말 대신에 “내부기호”(internal notation)란 용어를 쓰고 있다.(그의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2d ed. rev. and partly rewritten, New York, Wilson, 1939, p. 65)
2. S.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2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57, p. 371.

현을 일단(간접적으로) 저자순 또는 출판년대순으로 유취한 다음 다시 개별화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도서기호법중 수입순법은 단순한 개별화법이지마는 저자순 또는 출판년대순의 기호법은 어느 의미에서 분류의 보조 또는 보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LC의 “이중도서기호”(double Cutter number)법의 첫번째 기호는 주제를 자모순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³⁾ DDC 또는 LC에서의 저자기호표를 이용하여 배열하는 alphabetical device(또는 alphabetical arrangement)는 주제를 논리적 또는 체계적 순위로 전개하는 대신 기계적인 자모순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류의 한 방편인 것이다.

도서기호법을 분류의 일환으로 넓게 볼 수 있는 또 한점을 소설과 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자기호법을 도서기호법의 세가지 방식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곧잘 예시로 드는 것이 바로 이 항목들이다.⁴⁾ 같은 작가의 소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같은 피전자의 전기서를 함께 유취시켜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고 하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의 작가 또는 피전자에 의한 구분(또는 개별)은 분류기호를 사용하였든, 도서기호(저자기호)를 사용하였든 간에 분류의 세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도서기호로도 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전자(분류기호)로 보는 것이 더 이론적일 런지 모른다. 전기(傳記)에 있어 피전자는 사실상 주제인 것이며, 문학에 있어서의 작가도 CC의 구분법과 같이, 국어(language), 양식(form)과 더불어, 문학분류의 중요

3. Library of Congress (U.S.) *Author Nota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by Anna G. Laws. Washington, Govt. Print. Office, 1937, p. 10-12. John Phillip Immroth, *A Guide to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Rochester, N.Y., Library Unlimitted, 1968, p. 76-77.
4. Charles A. Cutter, *Explanation of the Cutter-Sanborn Author-Marks Three-figure Tables*, Revised by Kate Emery Jones, Springfield, Mass., Hunting Co., n.d., p. 2.
5. S.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6th ed. completely rev.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0. Chapter O, p. 1.98-2.94. CC에서는 문학(O)구문의 공식을 O[p],[p2][p3],[p4]로 정하고, 첫 [p](personality)는 language, [p2]는 form, [p3]은 author, [p4]은 work의 facet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p3] author 구분은 生年順이다.

한 facet인 것이다.⁵⁾ LC 도 분학분류(PR English literature; PS American literature)에서 작가를 분류기호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고⁶⁾ DDC 도 14판까지는 상당수의 작가가 분류번호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었으며, 모든 작가구분을 도서기호(저자기호)로 돌리고 있는 15판 이후의 DDC에서도 Shakespeare 만은 822.33이라 그 전영을 남기고 있어, 이것으로도 분류와 도서기호법의 한계가 애매함과, 넓은 의미에서 도서기호법이 분류의 일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기호법 중 수입순 방식은 순전한 개별화의 기능만 갖지마는⁷⁾ 저자기호법과 연대순기호법은 분류법과 마찬가지로, 유취의 기능과 개별의 기능을 아울러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章)의 첫머리에서, 말한바와 같이, 도서기호법은 도서의 배가(配架)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호법이다. 서가상의 도서의 배열과 겹색과 되꽃음(replace)과 점검을 용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도서기호법의 목적인 것이다. 분류기호와 더불어 도서기호는 서가목록의 배열기준으로도 적용되며, 대출부의 북카드의 배열에도 적용되는 수가 있다. 다만 분류목록에서는 청구번호를 그의 배열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⁸⁾

수입순번호, 출판년대순, 저자기호중 어느 것이 도서기호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는 쉽사리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취성(grouping)의 결여와 순차결정의 우연성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지탄받고 도퇴되어 버린 줄만 알아왔던 수입순법이 최근에 기술되

6. LC에서는 십자이 한 작가에 대해 49개의 잇달은 분류번호를 배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 PR 4200-4248 Robert Browning. 그런가하면 분류번호 내신 저자기호에 의하여 구분한 것도 있다.

7. 수입 순 도서기호법에서도 유취성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권호기호, 판차기호, 각 본기 호에 의해 동일한 저작을 한자리에 유취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8. 분류목록에서는 주제표목으로서의 분류기호 다음에, 도서기호를 무시하고, 기본기입(때로는 부출기입의 저자표목)을 이차적 배열기준으로 삼아 배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S.R. Ranganathan의 *Classified Catalog Code* (London, Asia Publishing House, 1964, p. 548)에서와 같이 2차적 배열기준을 도서기호로 삼는 방식도 간혹 있다

고서(technical reports), 마이크로필름, 녹음테이프, 음반 등 특수자료의 배열기준으로 재활되고 있는 점과, 정보센터에서는 심지어 분류법에 대신하여 부활하기 시작한 현상과, 도서기호 하면 저자기호를 곧 의 미해오던 미국에서마저 과학기술도서관계에 연대순기호법이 추천되고, 점차 이를 채택하는 도서관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 등은, 어느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움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기호법의 채택은 어디까지나 그 도서관의 이용과 관리면의 편의를 고려하여 자료제공의 방식, 서비스의 방식, 콜렉션의 주제적 또는 형태적 특성, 서가 또는 보관기구의 형태와 스페이스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지을 일로서, 어느 도서관이나 어느 콜렉션에도 다 들어맞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서기호법 중의 방식 선택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와 같이 자료를 원형 그대로 직접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보센터에서와 같이 복사, 초록 등 2차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가제와 폐가제 중 어느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책자자료의 콜렉션과 각종 비책자자료의 콜렉션들 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적(weeding)의 빈도가 갖고 뜻한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합리적인 도서기호법이란,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배열을 피하는 분류목록의 배열원칙과 가능한 한 합치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분류목록에서 동일 주제내의 2차적 배열기준으로 수입순번호를 취하는 방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수입순법이 이론적으로 풀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연대순법은 이론적이긴 하나 통용성이 적어 일반도서관용으로 반드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저자순법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분류목록의 가장 보편타당한 2차적 배열기준이 되고 있으므로⁸⁾, 특수도서관이나 특수자료의 콜렉션을 예외로 하고, 일반도서관

의 일반자료(ordinal materials)에 대해서는 가장 나온 도서기호법이라고 본다.

한편, 분류기호만 매기고 도서기호는 매기지 않는 이른바 도서기호의 불필요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분류항목내의 도서를 무순(無順)으로 아무렇게나 놓자는 것이 아니라, 실은 책등(spine)에 인쇄된 저자표시나 서명을 배열어로 삼아 자모순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⁰⁾ 결국은 도서기호법 중 저자순법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도서기호의 불필요론은 기호화하는데 드는 작업상의 노력(努力)과 시간을 절약코자 하는데서 나온 방편으로서, 결국은 그 수고를 서가배열을 하는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기호의 불필요론은, 설혹 동 주장에 찬성한다 치더라도, 책등에 인쇄된 그 저자명이나 표제가 로마자나 한글로 쓰여져 있어 그것을 직접 배열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나 용납될 수 있는 것이지, 漢字나 일본가나도 섞여 있는 콜렉션에 대해서는 적용키 어려운 주장이다. 이점, 동양서를 위해서는 기계적인 배열을 위하여 어차피 저자기호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자기호법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지고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전란후의 일이다.¹¹⁾ 1953년 3월에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찬다著者記號二位表의 使用法」을 표와 더불어 간행하였고,¹²⁾ 그다

9. Benoyendra Sengupta, *Cataloging, its theory and practice*, Calcutta, World Press Private Ltd., 1964, p. 227. Jesseh H. Shera & Margaret E. Eagan, *The Classified Catalog*,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6, p. 69.

10. W. Howard Phillips,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61, p. 53.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3, p. 87. Harry Dewey, *An Introduction to Library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Madison, Wis. 1957, p. 69-70.

11. 일제시에 龍山의 鐵道圖書館에서, 저자명의 첫자를 로마자로 따고 그 아래서 다시 수입 순번호를 매기는, 영국의 Stanley Jast식과 비슷한, 소위 저자별 수입 순기호를 사용한 바가 있긴 하다. 이것은 後에 木寺清一씨의 「簡易圖書記號法」(1949年 日本圖書館研究會 복리트; 1956년에 다시 그의 圖書整理法, 京都, 蘭書房, p. 120-141에 수록됨)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의 구체적인 용례를 동 鐵道圖書館의 「藏書目錄」(1929)에서 참고할 수 있다.

12. 海軍士官學校圖書館譯編, 『찬다著者記號二位表의 使用法』, 銀海, 檄紀4286[195

음해인 1954년 6월에는 高在昶씨가 韓中書를 위한 「韓國著者記號表」¹³⁾와 日書를 위한 「日本著者記號表」¹⁴⁾를 공표하였으며, 1955년에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동서에 대해 저자명(기입어)의 첫석자를 저자기호로 채기하는 방식이 당시 부관장으로 부임하였던 Elrod 씨에 의하여 고안되어 채용되었고,¹⁵⁾ 1958년에는 필자의 「동서저자기호표」¹⁶⁾가 공표되었으며, 1960년에는 李春熙씨의 「東書著者記號表」¹⁷⁾가 만들어졌고, 1961년에는 張一世씨의 「韓國人著者記號表」¹⁸⁾, 1964년에는 그의 완전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東洋書著者記號表」¹⁹⁾가 각각 공표됨으로서, 1950년대 초반기부터 1960년대 초반기까지의 약 10년간은 우리나라 도서관학 발전에 있어서 저자기호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였던 시기였던 것이다.

오늘날 저자기호법이 종래의 수입순 도서기호법에 대체하여 도서기호법의 위치를 거의 완전히 점유하게 된 이유에는, 이러한 활발한 연구·발표와 더불어 延大, 梨大 등의 각 도서관학 교실에서 저자기호법을 추천하여 소개하고, 그 방식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쳐온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2p. 등사판, 동 도서관의 판장 崔震武씨의 序文에 의하면 동 사용법의 번역은 당시 동 도서관의 직원이었던 朴熙永씨와 金晉錫씨가 담당하였다.

13. 高在昶, 韓國著者記號表, 서울, 韓國銀行調查部, 1954. (韓銀圖書分類法의 別添附錄)

14. 高在昶, 日本著者記號表, 서울, 韓國銀行調查部, 1954. (韓銀圖書分類法의 別添附錄)

15.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저자기호법에 대한 간단한 용례는 J. McRee Elrod의 "The Arrangement of Printed Materials in a Library"(人文科學, 第2輯(1958年7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동저자기호법에 대한 간단한 논평은 필자의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도협월보, 1958年7·8月號)에서와,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삽기 문제에 대하여"(人文科學, 第24·25合併輯)란 논문에서 가해져 있다.

16. 이재철, 동서저자기호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연구실, 1958.

17. 李春熙, 東書著者記號表, 서울, 成均館大學校圖書館, 1960[i.e. 1964]. 동표는 1962년 국회도서관에서 등사판으로 동 도서관의 사용을 위해 넣 바 있는데, 2년 뒤인 1964년에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서 출판년을 소급하여 "1960"년이라 기재하여 활판인쇄로 공간하였다. 그런데도 엣 수를 "1960"년이라 적었음은 아마 그의 원고가 완성된 해를 밟히고자 한해서 온 것으로 안다.

18. 張一世, 張一世式韓國人著者記號表, 서울,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學科, 1961.

19. 張一世, 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1964.

II. 표의 구조론과 구분성 문제

저자기호법이 넓은 의미에서 분류법의 일환에 속하는 한, 그 기호표의 구조도 가급적 분류표의 일반 구조원리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의 구조법(structure of tables)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열거식 방법(列舉式方法, enumerative system)이고, 또 하나는 분석적 합성식 방법(分析的合成式方法, analytico-synthetic system)이다.²⁰⁾ 열거식 방법이란 표출코져 하는 모든 사물이나 사상을 일일이 늘어놓는 방법을 말하며, 분석적 합성식 방법이란 표출코져 하는 사물과 사상을 일일히 항목을 잡아 늘어놓는 대신, 이를 더이상 분석할 수 없는 원소로까지 최대한 분석한 다음, 얻어진 원소를 어떤 연결원칙에 의하여 다시 합성하여 표출해 내는 일종의 조립식(組立式) 또는 조합식(組合式)방법을 말한다. 이를 문자의 구조법에 비유하면, 전자는 상형문자(象形文字)식 방법이고, 후자는 단음문자(單音文字)식 방법이다. 또한 이를 분류법에 비긴다면, 전자는 지식의 전분야(university of knowledge)를 구분하고 전개하는데 일일히 자리를 잡아 列記해 가는 LC, SC, BC, DDC, KDC 등과 같은 씨스템이고, 후자는 전체 지식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fundamental constituents(또는 isolates)에까지 분석한 다음 이를 다시 어떤 용도 즉 facet에 따라 합성시키는 CC와 같은 씨스템을 말한다.²¹⁾ 최근의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20. S.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Ed. 2,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57, p. 234.

21. Mills는 그의 *A Modern Outline of Library Classification*(1962, p. 56)에서 표의 구조방식으로 enumerative system과 analytico-synthetic system 외에 semi-enumerative system을 하나 더 들고 있다. Semi-enumerative Scheme이란, 대부분의 항목은 열거되어 있으나, 딴 열거식 분류표(예: LC, EC, 등)에 비하여, 합성식 방식이 비교적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가르킨다. Mills는 그 例書로 UDC를 들고 있다. 이 UDC는, Ranganathan이 그의 *Prolegomena*(2d ed. 1957)에서 “The UDC is mainly enumerative”(p. 138)라 말하여 열거표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 드는가 아닌, 그의 나중 저작 *Elements of Library Classification* (1959, p. 84)에서는 CC와 나란히 분석적 합성식표의 例書로 들고 있다.

용어로는 전자의 방식을 assigned code system(또는 assigned coding method)이라 부르며, 후자의 방식을 derived code system(또는 derived coding method)이라고 부른다.²²⁾

수학에 있어 애초에 취해지는 삼각형의 중심각(radian)의 각도 설정이 삼각함수를 결정지워줌과 같이, 상술한 두가지 구조법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장차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능률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갈림길인 것이다. 삼각형에서 한 각의 두변간의 거리는 중심각의 발기점에서는 별 거리감을 주지 않지만 그 두변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대변(對邊)과의 거리가 두드러지게 벌어져나감과 같이, 기호표에 있어서도 이들 구조법중 어느 방식을 취하건 그 채용초기엔 별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개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부피의 차가 두드러지게 커질 것이며, 써나가면 써나갈수록 그 능률의 차가 현저히 들어나게 될 것이다.

세계문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 그 근원을 가지고 발전한 문자쳐놓고 그림문자 또는 상형문자의 과정을 밟지 않고 발전한 것이 없다. 漢字는 말할 나위도 없고 로마자의 근원되는 글자도 그려하였다. 초기엔 다같이 열거식구조법으로 문자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자는 적당한 단계에서 그의 구조법을 분석적 합성식 방법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즉 상형문자와 표의문자에서 단음문자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끝내는 26자 밖에 안되는 글자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표음력과 표의력을 가진 문자로 발전을 본 것이다. 이와는 달리 漢字는 여전히 열거식 구조법을 고수하고 이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5萬의 부피를 가진 복잡한 어려운 문자로 화한 것이다. 그러나 漢字도 끝내는 순 열거식 구조법인 象形만의 構字로 일관하진 못하고 부분적으로 합성식법을 가미하여 발전시켰다. 漢字의 構字法則인 六書중 會意와 形聲법이 바로 그것이다. 즉 會意에 속하는 “明”과

22. Charles P. Bourne, *Methods of Information Handling*, New York, Wiley, 1963. [Chapter] 3: Coding (p. 38—69)

“林”자는 각자 “口”과 “月”, “木”과 “木”的 합성이며, 形聲에 系하는 “江”과 “聞”자는 각자 “氵”(水—意)와 “工”(音), “門”(音)과 “耳”(意)의 합성이다. 象形文字에서의 이러한 합성적 현상은, 열거식 분류표(LC, DDC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열거식 분류법이라고 반드시 언제나 열거식법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요, 부분적으로 나마 때로는 지리구분표, 연대구분표, 또는 주제세목표 등과 같은 보조표(auxiliary tables)에 의하여 합성식 기호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분류표의 구조론에 대해 영국의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은, 그의 Unesco에 제출한 한 연구보고²³⁾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한다: 분류표의 목적은 각 단위명사(unit term)간의 generic relations을 가장 유용하게 표시(display) 해주는데 있다. 그런데 열거식방식은 지식의 단순한 분지(分枝)(a simple tree of knowledge)만을 표시해 줄 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오직 다면적분류표(faceted classification)만이 이 관계명사간의 연결(the linkage of related terms)을 가장 적절히 표시(display)해 줄 수 있다.²⁴⁾

다면적 분류표란 곧 분석적 합성식분류표를 가르킨다. “다면적”이란 말이 용도 또는 기능적인 면에서 붙여진 것이라면, “분석적 합성식”이란 말은 작업적 또는 구조적인 면에서 붙여진 것이 다를 뿐이다.

이 다면적 분류표 즉 분석적 합성식 방법은 1957년 영국의 Dorking에서 열었던 「국제분류학연구회의」(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에서도 그의 절대적 필요성(absolutely necessity)이 인정되어 동회의 6개 중요항의사항 (main

23.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 *The Need for a Faceted Classification as the Basis as all Methods of Information Retrieval*, Unesco document, Ref. 320/5515, 26 May 1955. 이 보고(memorandum)는 다시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Dorking, 1957)에도 Appendix로 수록되어 있다.

24. *Ibd.*, p. 2, 8-9. (*Proceedings*, p. 138, 144)

points of agreement))중의 하나로 채택되어²⁵⁾ 전세계의 분류학계에, 앞으로의 표구조법으로서, 널리 권장되고 있다.

분류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저자기호표의 구조에 있어서도 열거식 방법과 분석적 합성식 방법이 있다. Cutter 표(또는 Cutter-Sanborn 표)가 전자에 해당되고, LC와 필자의 표가 후자에 해당된다. 다같이 저자명(좀더 정확하게는 기입어)을 기계적인 자모순으로 놓기 위하여 숫자 기호화한 것이되, 전자는 빈도가 많은 저자명을 일일히 열거하여 여기에 우연한 숫자를 순차적으로 붙인 것이며, 후자는 저자명(기입어)의 원소를 자모로 잡아 이를 빈도조사 끝에 숫자기호화한 것으로, 저자기호를 매길 때 저자명(기입어)의 첫문자와 더불어 이를 합성하여 사용토록 한 것이다.

분류표에 있어 모든 주제항목을 열거하기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현존한 주제를 완전무결하게 다 수록할 수는 없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장차 생길 주제를 예상해서 미리 다 수록해 놓을 수는 더욱 없는 노릇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자기호표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의 인명, 국명, 지명, 표제 등의 기입어를 다 수록해 놓을 수는 없으며, 더욱이 미지의 나라 또는 미래의 세계를 대비한 기입어를 장만해 놓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열거식 표보다는 오히려 필요에 따라 적용해 쓸 수 있는 즉응적(即應的)인 분석적 합성식 표가 훨씬 효율적이다.

Cutter 표와 이에 계열하는 열거식 저자기호표는 기호를 매길 때 일일히 표를 들추는 노력(努力)과 시간이 든다. 이 방식의 표로는, 청구번호의 보조역(auxiliary)²⁶⁾에 불과한 저자기호를 매기는데에, 그의 주

25.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 (Dorking, 1957), *Proceedings*, London, Aslib, 1957, p. 82.

26. W.C. Berwick Sayers,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4th ed. Completely rev. and partly rewritten by Arthur Maltby, London, André Deutsch, 1967, p. 80.

체계(主體格)인 분류기호를 배기는 것에 뜻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또한 漢字나 DDC 기호 등은, 같은 열거식 구조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조기성을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표의력을 강하게 가지게 되어 외우기 용이롭지마는 Cutter 표에 계열하는 저자기호표들은 조기성이 전혀 없어 외울 수가 거의 없는 것이 커다란 흠이다. 번호의 배정이 일단 끝난 다음에는 각 숫자기호가 갖는 뜻을 머리속으로 재생시킬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거식 저자기호표에 의한 기호는 다만 도서배열의 기준이 되어줄 뿐, 아무런 표의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서관학자 Harry Dewey 교수는 저자기호에 대한 언급에서, “Cutter 기호를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것을 당장 폐기하고, LC 저자기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권하고, 그 이유로서 “LC 기호는 표가 간단하여서 Cutter 표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표를 일일히 들춰볼 필요가 없으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⁷⁾

저자기호 하면 곧 Cutter 기호를 가르키고, 때로 동의어로까지 쓰이고 있는 미국에서 마저 이와같이 Cutter 저자기호표의 지위와 권위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 미국의 Cutter 표를 아직도 저자기호표의 바이블인 양 여겨 그의 구조방식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저자기호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 그것이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주체성을 잃은 소행이라고 비판을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하반기에 들

27. Harry Dewey, *Op. cit.*, p. 72—75.

원전을 참고하기 어려운 문을 위하여 아래에 그 원문을 인용한다.

“The use of LC book numbers is strongly recommended to all libraries, large and small. Because they do not have to be looked up in a complicated table, and because of the simplicity, they are great time-savers.” (p. 73)

“The Library that already uses Cutter numbers may abandon them, changing over to LC book numbers immediately” (p. 75)

어서서 만들어진 高在昶표(1954), 李春熙표(1960, i.e. 1964), 張一世표(1961, 1964)의 모두가 새로운 표 구조이론을 적용하지 못하고, 약 백년을 소급하는 19세기 하반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²⁸⁾ 복잡하고 전혀 조기성이 없는 저자기호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못된다.

분석적 합성식의 표 구조론이 어느 경우이고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론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마는, 한글을 기입어의 문자로 잡아, 이를 자모순이며 기계적으로 배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자기호법으로는 이보다 더한 이상적인 구조론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글의 특성에 맞기 때문이다.

한글은 음절철로 적는 문자이되, 그 자소(字素, 字母)가 자음과 모음의 단음문자로 분해되어 있어 기호로의 기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그의 음절구조의 법칙이 무수히 많은 것이 아니라 에르고드적(ergodic)인 구조에 따라, C+V, 또는 C+V+C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 즉 언제나 음절의 첫요소는 자음, 두번째 요소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²⁹⁾ 첫부분의 자음과 모음을 숫자기호화하여 이를 합성(synthesize)할 것 같

28. 張一世씨는 그의 “韓國人著者記號表의 構成原理”(도협월보, 제3권제2호, 1962년5월호 p. 49)이란 논문에서, Cutter의 원표(두자리표)는 1880년대에 만들어졌고, Cutter-Sanborn 표는 “1930年代에 濟增하는 여러 圖書館의 藏書數에 적응케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은 오류이다. Cutter-Sanborn 표의 출간에 대해 Berther R. Barden의 *Book Numbers* (p. 31), Margaret Mann의 *Introduction to Catalogu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p. 98), Clearles P. Bourne의 *Methods of Information Handling* (p.54)에 각각 소개된 참고서목에 보면 그의 출판사angi “Library Bureau, 1896”으로 되어 있다. 한편 Sayers의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and Bibliographers*, 3d ed.(p. 245)에 소개된 Cutter-Sanborn 표에 관한 기술을 보면, 등표는 처음에 두부로 나뉘어 출간되었는데, 1892년에 먼저 모음표가, 1895년에 자음표가 각각 나오고, 1899년에 합본되어 제3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29. 朴泳孝씨와 宋啓範씨의 “한글打字機의 鍵盤配列에 關하여”(電氣通信研究所報, 第9卷第2號(通卷第27號, 1968年6月號)란 논문에 의하면 한글의 음절구조법칙은 아래와 같은 10종류가 있다.(ㅏ와 ㅓ를 각각 독립된 단모음으로 봤을 경우)

| 자음, 모음의 조합 | 예 |
|------------|------|
| 1. C+V | 가, 고 |
| 2. C+V+C | 살, 솔 |
| 3. C+C+V | 까, 꼬 |
| 4. C+V+V | 와 |

으면 열거식 표의 두자리표와 똑같은 것이 되어, 굳이 표상에 수천 수만의 기입어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도, 또 열거식 표의 경우와 같이 표를 일일히 들춰서 기호를 찾지 않아도 그 구분과 번호매김이 가능한 것이다.

분석적 합성식 구조로 이루어진 필자의 표를 일부분 열거식 표로 재구조하여 이를 원래 열거식표인 李春熙표와 張一世표와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예 1 :

| 李春熙표 | 張一世표 | 李載喆 3·4표 | 李載喆 5·6표 |
|-------|------|----------|----------|
| 조일 | 473 | 조일 | 672 |
| 조재 | 474 | 재 | 674 |
| 조재, 흥 | 475 | 정 | 676 |
| 조정 | 476 | 정오 | 678 |
| 조정, 口 | 477 | | |
| 조정, 人 | 478 | 조종나 | 682 |
| 조정, ○ | 479 | 주 | 684 |
| | | 진 | 686 |
| 조정, 스 | 481 | 창사 | 688 |
| 조존 | 482 | | |
| 조종 | 483 | 조청 | 692 |
| 조종, 人 | 484 | 타 | 694 |
| 조종, ○ | 485 | 하 | 696 |
| | | 조차 | 81 |

5. C+C+V+V
6. C+V+V+C
7. C+C+V+C
8. C+V+V+C+C
9. C+C+V+V+C
10. C+C+V+V+C

꿔
확
꽃
왔
평
책

그러나 위의 합성법칙중 C+V와, C+V+C 형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합자음과 복합모음의 생기빈도(生起頻度)의 총계는 각각 5% 이하라 한다. 이 음절구조 원리는 朴泳孝씨가 쓴 宋啓範씨 발명의 “保留打字式印刷電信機”(電氣通信試驗所報, 第5卷第2號, 1964年6月)란 논문에도 논급되어 있다.

필자가 위 본문에서 “한글의 음절구조는 언제나 음절의 첫요소는 C, 두번째 요소는 V로 이루어 진다”함은, 쌍자음(C+C)초성을, 배열상, 예사자음(C)으로 동일시해서 보거나(필자에 저자기호표 제3표, 제5표에서와 같이), 이를 완전한 독립된 별개의 단음으로 보고(필자의 제4표, 제6표에서와 같이) 한 말이다.

| | | | | | | | |
|-------|-----|-----|-----|----|----|----|----|
| 조종, ㅎ | 486 | 조현 | 698 | 조처 | 82 | 조추 | 85 |
| 조준 | 487 | | | 초 | 83 | 치 | 86 |
| 조증 | 488 | 조홍 | 712 | 추 | 84 | | |
| 조종, ㅇ | 489 | 존가구 | 714 | 츠 | 85 | 조카 | 87 |
| | | | | 치 | 86 | 타 | 88 |
| 조종, ㅎ | 491 | | | | | 파 | 89 |
| 조지 | 492 | | | 조카 | 87 | | |
| 조지, ㅇ | 493 | | | 타 | 88 | 조하 | 92 |
| 조진 | 494 | | | 파 | 89 | 해 | 93 |
| 조찬 | 495 | | | | | 허 | 94 |
| 조창 | 496 | | | 조하 | 91 | 호 | 95 |
| 조창, ㅇ | 497 | | | 해 | 92 | 후 | 96 |
| 조천 | 498 | | | 허 | 93 | 흐 | 97 |
| 조철 | 499 | | | 혀 | 94 | 히 | 98 |
| | | | | | | 호 | 95 |
| 조철, ㅅ | 511 | | | | | 화 | 96 |
| 조철, ㅇ | 512 | | | | | 후 | 97 |
| 조준 | 513 | | | | | 흐 | 98 |
| 조증 | 514 | | | | | 히 | 99 |
| 조증, ㅅ | 515 | | | | | | |
| 조태 | 516 | | | | | | |
| 조태, ㅇ | 517 | | | | | | |
| 조태, ㅎ | 518 | | | | | | |
| 조학 | 519 | | | | | | |
| | | | | | | | |
| 조현 | 521 | | | | | | |
| 조현, ㅁ | 522 | | | | | | |
| 조현, ㅂ | 523 | | | | | | |
| 조형 | 524 | | | | | | |
| 조형, ㅅ | 525 | | | | | | |
| 조형, ㅇ | 526 | | | | | | |
| 조홍 | 527 | | | | | | |
| 조히 | 528 | | | | | | |
| 조히, ㅇ | 529 | | | | | | |
| | | | | | | | |
| 조히, ㅅ | 531 | | | | | | |
| 조히, ㅊ | 532 | | | | | | |
| 족 | 533 | | | | | | |

예 2³⁰⁾:

| 李春熙 표 | 張一世 표 | 李載喆 3·4표 | 李載喆 5·6표 |
|-------|-------|----------|----------|
| 박득 | 167 | 박득 | 27 |
| 박달 | 168 | 만 | 28 |
| 박명 | 169 | 박명 | 31 |
| 박명, ㅅ | 171 | 명숙 | 32 |
| 박명, ㅇ | 172 | 명자 | 33 |
| 박명, ㅎ | 173 | 명화 | 34 |
| 박동 | 174 | 모 | 35 |
| 박문 | 175 | 박문 | 36 |
| 박문, ㅅ | 176 | 문자 | 37 |
| 박문, ㅇ | 177 | 민 | 38 |
| 박문, ㅎ | 178 | 며 | 39 |
| 박물 | 179 | 미 | 42 |
| | | 박명나 | 43 |
| 박민 | 181 | 병아 | 44 |
| 박민, ㅇ | 182 | 병하 | 45 |
| 박봉 | 183 | 복 | |
| | | 박봉 | |
| | | 272 | 박바 |
| | | 274 | 배 |
| | | 276 | 버 |
| | | 278 | 벼 |
| | | 282 | 보 |

30. 예2에서 보인 필자의 표는 필자의 표를 열거식표로 변환하였을 경우, 가장 어색한 단을 나타내는 부문을 뽑은 것이다. 예1에서도 “져”와 같은 일반적으로 안쓰이는 어색한 음절을 복호화하였지만, 예2에서는 그 도가 더 심하여 “더”, “며”, “와”, “르”와 같은 음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중 “와”의 기호 “36”은 “와”서부터 “무”직전까지의 모든 음절을 대표하는 기호이므로 “요”가 주로 찾이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더”의 기호 “28”과 “며”의 기호 “33”(제5·6표로는 “34”)은, 앞으로 “박마리아”와 같은 서양식 이름이 생길 경우, “28”은 디크(또는 터 Dick) 일리스(Dilys) 등; “33”(제5·6표로는 “34”)은 머빈(Mervin), 멀(Merle), 메리(Merry) 등을 위하여 예비한 번호가 될 것이다. “르”의 기호 38(제5·6표로는 37)와 같이 전혀 그럴 용도도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된다. “박무재”에 대해 “박37”(제5·6표로는 박36)이라 매긴 다음에 “박문화”가 들어왔을 경우는 유휴번호를 차용하여 “박38”(제5·6표로는 박37)이라 매기면 번호의 팔막성도 가져와 오히려 좋다. 이 들은순파는 달리, “박민주”가 먼저 들어와 “박39”라 매기고 그 다음에 “박미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박38”이라 매기면 된다. “져”, “더”, “며”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

예 3 :

| 李春熙표 | 張一世표 | 李載喆 (한국현대작가기호일람) | | | |
|-----------|---------|---------------------|-----|-----|----|
| | | 소설 | 시 | 수필 | 희곡 |
| 김덕, 흥 585 | 김덕형 699 | 김덕영 | 24 | | |
| 김도 586 | | 도양 | 25 | 25 | |
| 김도, 희 587 | 김도아 711 | 도희 | | | |
| 김도, 흥 588 | 동 712 | 동걸 | | 252 | |
| 김돈 589 | 동사 713 | 동리 | 252 | 254 | |
| | 동식 714 | 동립 | 253 | | |
| 김돈, 희 591 | 동유 715 | 동명 | 25 | 256 | |
| 김돈, 스 592 | 동차 716 | 동민 | 254 | | |
| 김동 593 | 동화 717 | 동식 | | 252 | |
| 김동, 희 594 | 두아 718 | 동수 | 255 | | |
| 김동, 스 595 | | 동인 | 256 | | |
| 김동, 희 596 | | 동일 | | 254 | |
| 김두 597 | | 동진 | 258 | 258 | |
| | | 동환 | | | |
| | | 두원 | 258 | | |

단(單) 한면상의 20여개 밖에 안되는 기호를 가지고 합성해서 기호를 매겨 이를 다시 복호화(復號化—decode)할 것 같으면, 상기와 같은 표가 되는 것이다. 상기 예의 1과 2는 이렇게 해서 조씨와 박씨를 열거식으로 전개한 표의 일부를 보인 것인데, 우리나라 250종의 성 중에서 그 순위가 3위(朴)와 6위("조"음을 갖는 趙·曹중 "趙"의 순위)³¹⁾에 드는 성을 필자의 표를 가지고 열거식으로 전개하였을 때도 상기 예에서 증명하듯이, 일부러 열거해 놓은 張一世표와 李春熙표에 맞먹는 구분성을 갖는 것이다. 이보다 빈도가 약한 성에 대한 구분성을 말할 것도 없고, 국명, 지명, 단체명(기관명), 표제에 대한 구분성을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필자의 것이 높다.

31. 朝鮮總督府, 朝鮮の姓, 京城, 昭和9[1934], p. 55. 이것은 1930년 조사의 통계임. 1960년 조사의 통계는 한국일보, 1968년 3월 5일, p. 2에 “姓氏別人口別統計”란 표제 아래 나오는데, 朴과 趙씨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음. 曹씨에 대한 1930년 조사의 순위는 30位임.

필자의 저자기호법에 대해 그의 간편성과 조기성(기억성)과 능률성은 인정하지마는, 그의 구분성(개별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문제 삼는 이가 있다. 張一世씨는 필자의 표를 “장서수가 적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편하다”, 바꾸어 말하여 소도서관용 밖에 안된다고 평하고 있지마는,³²⁾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마 필자의 표가 일견 LC 표와 흡사하게 보이므로, LC 저자기호법의 구분성이 180정도 밖에 안되니,

$$\text{산출근거} : 26\text{문자기호} \times 7\text{숫자기호} = 182$$

거기에 균거를 두고 그런 억측을 갖게 한 모양인데, 실은 필자의 저자기호법은 그와는 판이하게 무려 제2표로는 15만8천6백(158,600)구분, 제5표로는 12만8백(120,800)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표상의 숫자기호에 의한 구분수

$$\text{제2표는 } 126\text{구분}$$

$$14\text{자음기호} \times 9\text{모음기호} = 126$$

$$\text{제5표는 } 96\text{구분}$$

$$(13\text{자음기호} \times 7\text{모음기호}) + (1\text{ㅊ자음기호} \times 5\text{모음기호}) = 96$$

(나) 음절철의 한글 한자에 의한 구분수

| | |
|----------------------|-------|
| 문교부조사 ³³⁾ | 1259자 |
|----------------------|-------|

| | |
|----------------|------|
| 장일세표의 기입어의 첫째자 | 459자 |
|----------------|------|

| | |
|----------------|------|
| 이춘희표의 기입어의 첫째자 | 281자 |
|----------------|------|

(다) 문자기호 하나에 표상의 숫자기호를 합성한 것에 의한 구분수

$$\left. \begin{array}{l} 1259\text{문자기호} \times 126\text{숫자기호} = 158,634 \\ 1259\text{문자기호} \times 96\text{숫자기호} = 120,864 \end{array} \right\}$$

32. 張一世, *學校圖書館運營指針*, 서울, 新書閣, 1964, p. 108.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1966, p. 425. (此項 張一世執筆)

33. 문교부, *우리 말' 말수사용의 찾기조사*, 두째엮음(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조사), 서울, 1955, p. 108—114.

$$\begin{cases} 459\text{문자기호} \times 126\text{숫자기호} = 57,834 \\ 459\text{문자기호} \times 96\text{숫자기호} = 44,064 \end{cases}$$

$$\begin{cases} 281\text{문자기호} \times 126\text{숫자기호} = 35,406 \\ 281\text{문자기호} \times 96\text{숫자기호} = 26,976 \end{cases}$$

이상과 같은 구분법은 필자의 저자기호법이 LC의 그것보다 제2표로는 약 870배, 제5표로는 약 650배 더 구분성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158,600 \div 182 = 870\text{배}$$

$$120,800 \div 182 = 658\text{배}$$

이 구분성을 다른 저자기호표들과 비교하여 보면, 필자표에 의한 구성분이 張一世표의 그것보다 약 35배(제5표로는 27배)나 더 강하고, 李春熙표의 그것보다는 약 41배(제5표로는 30배), Cutter-Sanborn 표보다는 약 12배(제5표로는 10배) 더 강한 것이 된다.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text{張一世의 기입어수(구분수)} : 4,455$$

$$\text{이재철 제2표와의 대비} : 158,600 \div 4,455 = 35.6\text{배}$$

$$\text{〃 제5표} \quad \text{〃} : 120,800 \div 4,455 = 27\text{배}$$

$$\text{李春熙표의 기입어수(구분수)} : 3,780$$

$$\text{이재철 제2표와의 대비} : 158,600 \div 3,780 = 41.9\text{배}$$

$$\text{〃 제5표} \quad \text{〃} : 120,800 \div 3,780 = 30\text{배}$$

$$\text{Cutter-Sanborn 표의 기입어수(구분수)} : 12,330$$

$$\text{이재철 제2표와의 대비} : 158,600 \div 12,330 = 12.8\text{배}$$

$$\text{〃 제5표} \quad \text{〃} : 120,800 \div 12,330 = 9.8\text{배}$$

그러나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이 구분의 심대성(甚大性)이 있다는 것은 일부 우리나라 도서관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다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도서관이 클수록 분류법도 세분의 심도가 깊은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Phillips가 말한 바와 같이 세분된 분류를 할수록, 한 항목이 찾이할 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자기호에 의한 구분의 필요

성은 그마만큼 적어져가는 것이다.³⁴⁾ 문제는 수만 수십만의 분류항목 중 시, 소설, 수필, 전기 등의 서너 항목에서의 충복인데, 필자의 표는 이에 대한 감내성도 상당히 있어, 서가목록을 참고하여 약간의 조절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 그 약간의 조절의 수고마저도 고려하는 이(者)를 위하여, 필자 표의 제2판(1971년초 발간예정)에는 「한국현대작가기호일람」과 「일본현대작가기호일람」을 부록으로 첨부해 놓아 저자기호표로서의 완벽을 기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III. 저자기호표 작성을 위한 빙도조사의 대상에 선정 문제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저자기호”란 용어는 업적한 의미에서 저자만에 대한 기호는 아니다. 저자기호는 원칙적으로 기본기입의 기입어(표목)를 대상으로 잡아 매기는 것이므로, 그 속에는 저자 외에 표제(서명)도 포함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기호표는 분류의 세목을 자모순으로 전개(alphabetical arrangement 또는 alphabetical device)하고자 할 때도 응용되는 수가 있음으로, 때로는 일반명사(term)가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 또 저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저자”의 범주에는 개인저자와 더불어 단체저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단체명, 기관명, 또는 관할구명(국명, 지명)이 저자기호 매김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Cutter 표와 이를 추종한 高在祿표, 李春熙표, 張一世표 등이 위와 같은 저자기호 매김의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저자명 즉 인명만을 대상으로 빙도조사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불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항목(DDC로)내의 개별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 주로 단체명 또는 관할구명을 대상으로 저자기호화하는 항목 :

34. Phillips, *Op. cit.*, p. 53. “The more closely the library is classified, the less need for these [author] marks.”

SS. 06

060

274—279

329

353—354

373.3—.9

378.4—.98

:

2. 주로 표제를 대상으로 저자기호화하는 항목 :

SS. 03

05

08

030

050

071—079

423

433

443

:

우리나라 일부 도서관인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는 Cutter 표의 구성원리에는 이와 같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9세기 말엽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양해될 수 있다. 당시로 말하면 단체저작물이 있긴 하였어도 그다지 양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터이고, 쪽별 등의 축자간행물이 있긴 하였어도 대단한 비중을 차이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일반 단행본의 경우에도 1960년도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ICCP 원칙, CCR, AACR에서와 같이 그렇게 표제 아래 기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그의 도서량도 지금과 같이 많

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모른다. 원래 Cutter 표는 주로 소설과 전기(傳記) 항목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데, 그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불합리성을 갖게 된 것이다.³⁵⁾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임인자 Merrils은 1912년에 세 가지 표로 이루어진 도서기호표를 만들었다. 제1표는 인명, 지명, 물명(物名)을 자모순으로 놓기 위한 십진식으로 된 두자리표이고, 제2표는 정기간행물의 표제를 자모순으로 놓기 위한 십진식 두자리표이며, 제3표는 십진식으로 된 연대기호표이다.³⁶⁾ 그러나 동 저자기호법은 백(100)밖에 안된다는 구분성의 약함에서인지 또는 Cutter 기호에 의해 점유된 기성 도서관계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움에서인지 별 보급을 못 보고, 오늘날은 사실상 도태되고 만 폭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Cutter 표의 상기 불합리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1965년에는 스탠포드대학교 법파대학(Law School of Stanford University)의 John Henry Merryman과 Rosalee M. Long씨가 Library of Congress 의 Catalog of Printed Cards(1898—1942)의 기본기입에 대한 자모의 빈도조사를 하여 동 대학도서관을 위해 빈도의 “이상적 분포”(ideal distribution)를 이룬 저자기호표를 새로 만들어 내었다.³⁷⁾ 동 표는 기호법에 있어 문자(로마자)만으로 된 베자리의 순수기호법을 취하고 있다. Cutter 표와 같은 혼합기호법이 나오나 그렇지 않으면 상기 새표와 같은 문자만의 순수기호법이 나오나의 문제는 구분성과 배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童에서는 차치하기로 한다. 다만 이 새로운 표는 빈도조사의 방법면에 있어 그 어느 표보다도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

35. John Henry Merryman & Rosalee M. Long, "A New Author Not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 9, no. 1 (Winter 1965), p. 356. Harry Dewey, *Op. cit.*, p. 82—83.

36. *Public Libraries*, v. 17(1912), p. 127—129. 仙田正雄, “圖書記號法通論”, 圖書館研究, v. 15, p. 123—124, 132—133; 同氏의 圖書分類と圖書記號, 京都, 蘭書房, 1952, p. 179—181.

37. John Henry Merryman & Rosalee M. Long, *Op. cit.*, p. 356—358.

고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1958년에 발표한 필자의 저자기호표(제2표)는, Cutter 표의 상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느라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미국의 LC의 Catalog of Printed Cards(후의 National Union Catalog)와 같은 우리나라의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신 필자는 인명과 단체명의 기입에 대한 자모 빈도조사를 위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어의 표제기입과 외래어기입(인명, 지명 등)을 위해서 문교부조사의 글자찾기통계를 참고하였으며, 韓·中·日의 인명, 단체명, 표제, 일반주제명 등이 주로 漢字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漢字사전의 음색인의 자모빈도통계를 여기에 가산하여 평균치를 낸 것이다.³⁸⁾ 그 빈도의 비율은 동 차저기호의 제2판에 수록되는 제3표서부터 제6표까지의 새표를 위해서 새로 조사한 통계, 즉 국립중앙도서관 편간의 「韓國書目」(1945—1962)과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1963—1969, 1965년 이후 연별로 간행)의 기본기입에 대한 자모빈도조사의 통계와 순위면에서 같았다. 전번(1958년)의 통계방법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저자기호표를 지목하여 張一世씨는 “姓名의 통계에 의한 記號化가 아니므로 重複이 생기게 된다”³⁹⁾고 비평하였다. 성명만의 통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단체명, 관할구명, 표제까지도 고려한 점이 “단점”일 수 없으며, 충복성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면에서 張一世표보다 35분의 1이 덜한 것이며, 張一世표에서 가장 세분되었다는 한국의 인명에 있어서도, 대체적인 면에서 張一世표가 필자의 표보다 오히려 더 충복성이 있음을 앞장(제Ⅱ장)에서 표의 대비를 통해서 예증한 바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빈도통계의 방법에 있어 고쳐야 될 쪽은 필자의 표가 아니라, 성명만의 통계에 의존한 張一世표인 것이다.

張一世씨는 1961년 그의 「韓國人著者記號表」를 공간하고, 그표의 구

38.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1958년 7·8월호, p. 2—26.

39. 張一世, 校校圖書館運營指針, p. 108. 韓國圖書館協會, *O.p. cit.*, 425.

성원리를 밝힌 논문⁴⁰⁾에서 동표는 “99,835名에 達하는 이름을 될 수 있는대로 廣範圍하게, 그리고 各界各層에서 골라 統計資料로 삼았다”⁴¹⁾ “그러므로 가장 普遍性 있고, 그리고 矛盾과 無理가 없어 自然的으로 著者名의 가나다順序에 따라 排列되도록 되어 있다”⁴²⁾고 자랑하였다. 張씨의 구성원리, 즉 인명만에 기초한 표 구성의 방법이, 張씨의 말과는 정반대로, 얼마나 “보편성”이 없고 “모순”과 “무리”가 있는 방법인 가는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성명의 범주마저도 한국인에 국한시키고 있는 점이다. 동서·양서를 혼가하는 도서관이나 한·중·일서를 혼가하는 도서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도서만을 갖거나 별치하는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한국도서⁴³⁾ 중에는 외국도서의 한국어 번역본, 외국인에 관해 한국어로 쓰인 저작, 외국인이 한국어로 직접 저술한 도서 등이 있을 터이므로, 목록상에서 그 외국인명에 대한 표목문자를 한글로 채기할 경우, 한국인명만을 범위로 잡아 만든 저자기호표는, “보편성”이 없고, “모순과 무리”가 있어서 채택할 만한 것이 못된다. 동 표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분류항목 중 한국문학의 각 양식번호에서나 한국인 전기 항목에서 밖에 적용성이 없는 것이다.⁴⁴⁾ 張一世씨는 동표에 외국인명이 고려되지 않은 모순점을 3년 뒤에 자인하고,⁴⁵⁾ “서양인과 일본인 약 2만5천명을 더 조사

40. 張一世, “張一世式韓國人著者記號表의 構成原理”, 朝鮮月報, 第3卷, p. 42—51, p. 118—126 (1969年5月號, 6月號). 이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學科에서 1962년에 프린트판으로 출간한 책자를 轉載한 것이다. 후자(프린트판)에는 韓國人名의 음절별 빈도통계가 더 수록되어 있다.

41. *Ibid.*, p. 120.

42. *Ibid.*, p. 123.

43. “한국도서”란 용어는 쓰여진 언어와는 관계없이, 한국에서 출판된 도서란 뜻으로 쓰임이 보다 일반적인 용법인 것 같다. 그러나 도서관의 폐목과 서가배열면에서는, 한국어로 쓰인 도서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44. 張一世씨의 제2표격인 「東洋書著者記號表」를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한국문학의 작품을 위한 각 양식번호에서와 한국인 전기 항목 등에서만은 이 제1표(韓國人著者記號表)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균형된 분포의 기호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5. 張一世, 張一世式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1964, p. 9(使用法 1). 씨의 學校圖書館運營指針, p. 108.

하여 이를 제1표에 가미하여” 1964년에 그의 제2표격인 「東洋書著者記號表」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명과 관할구명, 표제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⁴⁶⁾ 이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한, 12만5천명 아니라 100만명, 아니 1,000만명의 인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를 만들었다 해도 이 기입이 분포의 불합리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IV. 목록기입에서 동양인명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는 문제와 이에 따른 저자기호표 구조의 문제

같은 분류항목내에서의 저자순(기입어순)의 배열은 목록과 서가가 같은 씨스템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목록에선 한글순으로 배열하면서, 서가상은 로마자순이나 일본 가나(假名)순으로 배열한다든지,⁴⁷⁾ 같은 한글순이라 할지라도 목록에선 표목에 구두점을 찍어 이를 고려한 배열을 취해주면서, 서가에선 이를 무시한 배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된다. 같은 분류항목내의 서가상의 도서배열은 저자기호에 의한 것이므로, 요는 이를 결정해주는 저자기호표 또는 저자기호법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Cutter 표나 LC 저자기호법은 그것이 일치되게끔 마련되어 있다. 필자의 저자기호법도 그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그러나 李春熙표 및 張一世표는 그것이 일치 안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 도서관이 韓國인명에 대한 기입을 현행 「韓國目錄規則」(1964年초판이나 1966년 수정판)에 의해 성명간에 콤마를 찍은 형식을 취할 경우, 동표에 의해 저자기호를 매긴 도서의 배열순은 목록의 배열순과 판이한 순위를 가져오는 것이다.

46. 張一世표의 제2표(1964)에는 제1표(1961)에 보이지 않았던 “한국(14구표)”, “대한”, “중국”, “국립”의 기입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겨우 그 네ট 기입어를 가지고 전체 단체명, 관할구명, 표제 등을 대신했다고 할 수는 없다.

47. 그 방식을 취한 도서관의 실례와 이에 대한 비판은拙稿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참기 문제에 대하여”, 제Ⅲ장 : 저자기호로서의 문자기호의 선택문제(人文科學, 第24·25合併輯) 참조.

예 :

張一世표, 李春熙표에 의한 서가상의

도서의 순위

장일세기호순 이춘희기호순

남궁각 L48 L178

남궁역 L485 L179

남만수 L49 L186

남홍우 L54 L241

복록상의 기입의 순위

<한목구>에 의한

구두점단위 단어 단위

남, 만수 남 만수

남, 홍우 남 홍우

남궁, 각 남궁 각

남궁, 역 남궁 역

이광수 ○666 ○585 이, 광수 이 광주

이노우에 ○691 ○622 이, 노우에 이 회주

이시카와 ○793 ○778 이, 시카와 이 노우에

이회주 ○959 ○982 이, 회주 이 시카와

張一世표와 李春熙표중에서 상기 인명을 위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 장 일 세 표 | | | 이 춘 희 표 | | |
|---------|-----|-----|---------|-------|-------|
| 남 | 46 | 이가 | 654 | 난조 | 172 |
| 남바 | 47 | 장 | 655 | 남 | 173 |
| 남가 | 48 | : | : | 남경 | 174 |
| 다 | 49 | 이고 | 664 | 남계 | 175 |
| 남바 | 51 | 광 | 665 | 남광 | 176 |
| 수 | 52 | 광수 | 666 | 남구 | 177 |
| 오 | 53 | 광유 | 667 | 남궁 | 178 |
| 자 | 54 | 교 | 668 | 남궁, へ | 179 |
| 남- | 55 | 구다 | 669 | 남궁, へ | 181 |
| 내- | 56 | : | : | 남기 | 182 |
| : | : | 이남수 | 686 | : | 이광 |
| | | 노 | 687 | : | 584 |
| 음- | 652 | 노우 | 688 | 남도 | 186 |
| 이- | 653 | 노우마 | 689 | 남명 | 187 |
| | | | | : | 이광, す |
| | | | | : | 587 |
| | | | | : | 이광, へ |
| | | | | : | 588 |

| | | | | | |
|------|-----|-------|-----|-------|-----|
| 이노우예 | 691 | 이교 | 589 | 이히 | 983 |
| 다 | 692 | : | : | 이히, ㅅ | 984 |
| 대 | 693 | 이남 | 621 | 인 | 985 |
| : | : | 이노 | 622 | | |
| 이승자 | 785 | 이노이에 | 623 | | |
| 시 | 786 | 이다 | 624 | | |
| 시가 | 787 | 이달 | 625 | | |
| 시바 | 788 | : | : | | |
| : | : | 이승, ㅎ | 774 | | |
| 시카 | 792 | 이시 | 775 | | |
| 시카와 | 793 | 이시다 | 776 | | |
| 신아 | 794 | 이시이 | 777 | | |
| : | : | 이시자 | 778 | | |
| 이회사 | 958 | 이안 | 779 | | |
| 회주 | 959 | : | : | | |
| | | 이홍, ㅈ | 982 | | |

이는 목록의 기입어를 순 음절순으로 배열할 것을 전제로 한 기호배정이지, 韓國目錄規則의 기입형식에 쫒아 韓中人의 성명간도 콤마를 쳐서, 구두점을 고려에 넣은 배열법을 취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상기 예시중의 李春熙표에,

| | | | |
|-------|-----|-------|-----|
| 남광 | 176 | 이광 | 584 |
| 남구 | 177 | 이광, ㅅ | 585 |
| 남궁 | 178 | 이광, ㅇ | 586 |
| 남궁, ㅅ | 179 | 이광, ㅈ | 587 |
| 남궁, ㅎ | 181 | 이광, ㅎ | 588 |
| 남기 | 182 | 이교 | 589 |

와 같이 기입어속에 콤마를 친 형식이 보이나, 이는 성과 명을 구분하는 콤마가 아니라, 세째자 또는 그 이하의 글자가 약기(略記)된 것임을 보일 뿐이다. 즉 “이광, ㅈ”은 “이광자”란 뜻으로서 그 다음의 기입어 “이광, ㅎ” 즉 “이광하”란 이름 직전까지의 모든 이름을 “ㅈ597”이 대표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 구두점의 용법은 온당

한 것이 못된다. 콤마를 빼고 “이광스”과 같은 형식을 취하든지, 아주 음정철로 “이광자”와 같이 표시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 표를 가지고 굳이 목록에서와 같이 표목상의 구두점을 고려한 배열을 기하려면 “남, 만수”, “남, 흥우”는 다같이 張一世표로는 “ㄴ47”, 李春熙표로는 “ㄴ173”란 기호를 갖게 되어 그 안에서 재구분이 필요하게 되며, “이, 광수”, “이, 희주”도 다같이 張一世표로는 “ㅇ653”, 李春熙표로는 “ㅇ561”란 기호를 갖게 되어 그안에서 재구분해 주게 된다. 즉 “남”씨의 성을 가진 모든 저자들은 “ㄴ47”(李春熙표로는 ㄴ173), “이”씨의 성을 가진 저자들은 모두 “ㅇ653”(李春熙표로는 ㅇ561)와 같이 각각 한 개만의 기호를 갖게 되어 중복성이 너무 커지며, 나머지 기호들은 대부분 유휴번호가 되어 사실상 쓸모 없는 표가 되고 마는 것이다.

張一世씨와 李春熙교수는 다같이 목록의 기입론에서 韓國인명의 성명간에도, 서양인명의 경우와 같이, 콤마를 찍기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다. 특히 張씨는, 그가 도협의 목록분과위원장직에 있을 당시, 그러한 자기의 지론을 우리나라의 표준목록규칙인 「韓國目錄規則」에 도입시킨 분이다. 그러한 분이 저자기호표에서는, 목록에서의 지론을 저바리고, 목록의 기입순위와 판이한 배열순위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난한 일이다. 아마 이러한 배열의 차이를 가져오리라 미처 생각치 못한데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필자의 저자기호법은 韓中인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던 안찍던 상관없이 그 형식에 즉응(即應)해서, 목록의 기입순과 일치되게 저자기호를 매겨줄 수 있다. 곧 목록의 기입형식에 콤마를 찍지 않을 경우는 기호의 합성시 문자기호와 숫자기호를 그냥 연결시키면 되고, 표목에 콤마를 찍을 경우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 사이에 콤마를 쳐서, 콤마가 안찍힌 기호보다 앞세워 배열해주면 된다.⁴⁸⁾

48. 사용법의 자세한 것은 별도의 논문 “동서저자기호법의 구성원리와 사용법상의 체문체”(도협월보, 1971년초 발표예정), 및 필자표 제2판의 사용규칙 참조. 우선 여기서 적어둘 것은, 韩中인의 성명간에 콤마는 찍지 아니하되, 성과 명을 구분하여 단

예 :

| 성명간에 콤마를 안찍을 경우 | | 성명간에 콤마를 찍을 경우 | |
|-----------------|----------|----------------|----------|
| 목록기입의 순위 | 저자기호의 순위 | 목록기입의 순위 | 저자기호의 순위 |
| 남궁각 | 남16 | 남, 마수 | 남, 32 |
| 남궁역 | 남165 | 남, 흥우 | 남, 98 |
| 남단수 | 남32 | 남궁, 각 | 남 16 |
| 남홍우 | 남97 | 남궁, 역 | 남 165 |
| 이광수 | 이15 | 이, 광수 | 이, 15 |
| 이노우에 | 이195 | 이, 회주 | 이, 97 |
| 이시카와 | 이58 | 이노우에 | 이 195 |
| 이회주 | 이97 | 이시카와 | 이 58 |

필자는 韓國인의 성명사이에 콤마를 찍는 목록의 기입형식에 대하여 원래부터 반대이다.⁴⁹⁾ 성명간의 콤마는 그 기입이 도치형을 취하였거나, 적어도 성의 독립성이 강하여 평시 호칭할 때 성과 명간에 어떤 휴식(pause)을 취하는 나라의 인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韓中인명과 같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⁵⁰⁾ 바꾸어 말하여 서양인명의 경우와 같이 명·성의 순으로 된 인명을 성·명순으로 고쳐 도치형으로 기입의 형식을 잡을 경우 성 다음에 콤마를 찍고 명을 기입하는 것이지, 韩國인명과 같이 원래 인명의 구조가 성·명순으로 되어 있고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적순으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성명간에 콤마를 찍지 아니하는 것이다.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에서 韩國인명의 기입형식을 성명간에 콤마를 찍도록 규정한 것⁵¹⁾은, 확실히, 현지의 일반적인 용법을 따라야 된다.

어순으로 배열코자 할 경우에도, 저자기호는 문자기호 다음에 콤마를 찍고 숫자기호를 덧붙여야 목록의 기입순과 저자기호의 순위가 일치하게 된다.

49.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人文科學, 第18輯(1967年12月), p. 65—92.

50. *Ibd.*, p. 75—76, 79—80.

51.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p. 80.

는 목록의 기입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그러나 로마자로 기입형식을 잡는 영미의 목록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하지 아니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간다. 성명순으로 이루어진 동양인명을 로마자로 표시할 경우, 월남인은 그의 표시를 언제나 성명순을 고수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韓中日人은 각자의 기호(嗜好)에 따라 또는 그 출판물의 편집자의 방침에 따라 성·명순 또는 명·성순으로 마구 표시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실례로, “李奎浩”교수의 로마자명의 저자표시를 실제 저작상에서 찾았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 있으며,

예 : Rhee Kyu Ho⁵²⁾

Rhee, Kyu Ho⁵³⁾

Kyu-Ho Rhee⁵⁴⁾

같은 저널(논문집)안에서도 아래와 같이 사람에 따라 그 저자표시의 형식이 일정치 않으므로⁵⁵⁾

예 : Rhee Kyu Ho

Han, Tae-dong

Sun Jai Kim

영미계의 목록자 입장에서는 어느 요소가 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의 필요가 결실하였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漢字나 한글의 저자표시의 경우는 언제나 성명순으로만 나타나고 있지, 명·성의 순으로나 성 다음에 콤마를 찍고 명을 기재하는 형식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다른 것이다. 즉 李奎浩, 韓泰東, 金善再교수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 예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다.

52. 延世論叢, 第4輯의 뒤 표지의 영문목차 및 영문요약(p. 143)상의 저자표시.

53. 東方學志, 第9輯의 뒤 표지의 영문목차 및 영문요약(p. 73)상의 저자표시.

54. 人文科學, 第14·15合併輯의 뒤 표지의 영문목차 및 영문요약(p. 429)의 저자표시.

55. 延世論叢, 第4輯의 뒤 표지의 영문목차.

| | | |
|-----|-------|-------|
| 예 : | 奎浩李 | 규호이 |
| | 李, 奎浩 | 이, 규호 |
| | 韓, 泰東 | 한, 태동 |
| | 善再金 | 선재김 |

사전이나 목록의 기입(entry)에서, 콤마는 성과 명간의 단순한 구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요소로 잡은 기입어에 상당한 식별력과 독립성이 있긴 있는데, 동음이의어가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정어를 부기하는 표시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콤마는 다음과 같이 원괄호로 대체할 수도 있는 일이다.

| | | |
|-----|-------------------|--------------------|
| 예 : | Salem, New Jersey | Salem (New Jersey) |
| | Salem, Ohio | Salem (Ohio) |

Ranganathan은 이런 용법으로 콤마대신 원괄호를 사용하여 한정어를 아래와 같이 부기하고 있다.⁵⁶⁾

| | |
|-----|--|
| 예 : | Adams (Mary) (1898) |
| | Foucher (Alfred) (1865) |
| | Watts-Dunton (Theodore) (1832—1914) |
| | Leon y Roman (Ricardo) (1877) |
| | Gandhi (Mohandas Karamchand) |
| | Ranganathan (Shiyali Ramamrita) (1892) |

콤마를 원괄호로 바꿔, 위에 예시한 형식으로 「韓國目錄規則」에서 규정한 표목의 형식을 읽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 | | | |
|-----|-------|----|-------------------|
| 예 : | 이(규호) | 또는 | 이(규호) (1926) |
| | 한(태동) | 또는 | 한(태동) (1923) |
| | 김(선재) | 또는 | 김(선재) (1917) |
| | 유(성룡) | 또는 | 유(성룡) (1542—1607) |

56. S.R. Ranganathan, *Heading and Canons*, Madras, Viswanathan, 1955, Chapter 5, 그중 특히 p. 130—160. 및 그의 *Classified Catalog Code*, p. 241—245.

위에 예시한 표목들의 첫 부분인 이, 한, 김, 유를 그뒤의 팔호로 둑인 부차적 요소(secondary element) 없이 상기 Adams, Foucher, Watts-Dunton, Leon y Roman, 등과 대등하게 식별성 또는 통용성(potency)을 갖는 기입요소(entry element)로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바꾸어 말하여 우리나라 사전류가 취하고 있는 서양인명에 대한 기입형식과 같아,⁵⁷⁾

| | | | |
|--------------|----------------|----|---------------------------------|
| 예 : | 에디슨(1847—1931) | 또는 | 에디슨(Edison, Thomas) |
| | 링컨(1809—1865) | 또는 | 링컨(Lincoln, Abraham) |
| | 간디(1869—1948) | 또는 | 간디(Gandhi, Mohandas Karamchand) |
| 벽 | | 또는 | 벽(Buck, Pearl S.) |
| 리(1807—1870) | | 또는 | 리(Lee, Robert Edward) |
| 리(1859—1926) | | 또는 | 리(Lee, Sir Sidney) |

姜邯瓚, 李珥, 李舜臣, 南公轍, 南宮橒, 皮千得, 王安石, 孫文 등의 韓中인명에 대하여도 과연 아래와 같이 성만의 형식으로 기입할 수 있을 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예 :

| 기입형 A | 기입형 B | 기입형 C | 기입형 D |
|------------------|---------------|---------|--------------------|
| 강 | 강(948—1031) | 강(姜邯瓚) | 강(姜邯瓚)(948—1031) |
| 남 | 남(1760—1840) | 남(南公轍) | 남(南公轍)(1760—1840) |
| 남궁 | 남궁(1853—1939) | 남궁(南宮橒) | 남궁(南宮橒)(1853—1939) |
| 이 | 이(1536—1584) | 이(李珥) | 이(李珥)(1536—1584) |
| 이 | 이(1545—1598) | 이(李舜臣) | 이(李舜臣)(1545—1598) |
| 피 | 피(1910—) | 피(皮千得) | 피(皮千得)(1910—) |
| 왕 | 왕(1021—1086) | 왕(王安石) | 왕(王安石)(1021—1086) |
| 손 ⁵⁸⁾ | 손(1866—1925) | 손(孫文) | 손(孫文)(1866—1925) |

57. 世界百科大事典, 學園社, 1966. 천과학습대사전/4. 5. 6학년용, 동아출판사, 1969, 등

58. 중국음을 따라서 “쑨 또는 쌈(1866—1925) 또는 쌈(孫文) 또는 쌈(孫文)(1866—1925)”

위와 같은 기입형식을 용납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분도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나온 각종 사전류, 색인류, 목록류, 명부류 등의 기입어(entry)로서 그러한 형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어 왔다는 것으로도 그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위와 같은 기입형식이 용납되지 않는 한, 韓中인명의 성명간에는 이론상 콤마를 찍을 수 없다고 필자는 믿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韓國現代史」의 索引기입어에 다음과 같은 일본인에 대한 기입형식을 볼 수 있다.⁵⁹⁾

예 : 가가와(賀川豊彦)

기구찌(菊池武夫)

기도(木戸幸一)

미와(三輪和三郎)

이러한 기입형식은 필자가 편찬한 「東亞日報索引」의 기입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⁶⁰⁾

예 : 가와무라(川村竹治)

다시로(田代安太郎)

다까야나기(高柳保太郎)

다케이(武井, 강원도경찰국장)

다만 일본인명 기입에 있어 이 두 색인간에 다른 것은, 전자는 일률적으로 모두 성만을 한글로 기입한데 비하여, 후자는 주위에 있는 참고문헌에 의해서 명까지의 발음이 다 확인이 안되는 것에 한하여 성만을 표기하여 성명이 다 표기된 것보다 먼저 배열한 점이다.⁶¹⁾

예 : 다나카(田中善六)

다나카(田中幹三)

59. 韓國現代史, 서울, 新丘文化社, 1969.의 자권말의 索引 기입어. 例示는 卷5에서 떤 것이다.

60. 東亞日報索引, 第1卷, 第2卷, 서울, 東亞日報社, 1970.

61. 이재철, “신문기사색인법의 이론과 실제, 東亞日報索引편찬의 경우”, 人文科學, 第22輯(1969년12월), p. 92. 東亞日報索引, 일러두기.

다나까 구니시게(田中國重)

다나까 기이찌(田中義一)

필자는 「東亞日報索引」에서도 졸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에서와 똑같이 일본인명의 성에 대하여 기입요소(entry element)로서의 자격은 인정하였지만,⁶²⁾ 성명간에 콤마를 찍어주는 일은 보류하였다. 그 이유는 성과 명 또는 명과 성간의 콤마는 도치형을 뜻함이 더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치형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입요소(entry element)를 그 이름의 첫부분부터 잡았을 경우에는 콤마 없이 직순(direct order)으로 기입하는 것이 AACR의 원칙인 것이다.⁶³⁾

예 : Ram Gopal

Dante Alighieri

x Alighieri, Dante

Raffaelle Sanzio

x Sanzio, Raffaelle

AACR에서 콤마가 표목상에서 구분과 휴식의 뜻과 더불어, 도치의 뜻을 지니고 있는 가장 뚜렷한 예로는 성·명순으로 기입한 원남인명의 기입형식에 대하여 명의 마지막 요소로부터의 참조형식을 들 수 있다.⁶⁴⁾

예 : Tran-van-Trai

x Trai, Tran-van

Nguen-cao-Ky

x Ky, Nguen-cao

AACR의 도치형을 뜻하는 콤마의 이러한 용법은, 복합성(compound surnames)의 기입형식과 그에 대한 참조형식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62. 주 49와 50 참조할 것.

63.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p. 80 (Entry of Name의 Introductory note의 1항). Vatican Library, Rules for the Catalog of Printed Book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8, Rule 78—79.

64.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p. 81.

수 있다.⁶⁵⁾

- 예 : Fénelon, François de Salignac de la Mothe-Fénelon, François de La Mothe-Fénelon, François de Salignac de Day-Lewis, Cecil
 x Lewis, Cecil Day-Figueiredo, Adelpha Silva Rodrigues de Silva Rodrigues de Figueiredo, Adelpha
 x Rodrigues de Figueiredo, Adelpha Silva Molina y Vedia de Bastianini, Delfina
 x Vedia de Bastianini, Delfina Molina y Bastianini, Delfina Molina y Vedia de

원활호나 콤마는 다음과 표목에서 구분과 한정(qualification)의 기능을 갖는 구두점이다.⁶⁶⁾ 인명이외의 기입에 있어서, 원활호는 일반적 구분과 한정에만 쓰이고 도치적 용법에는 별로 안쓰이며(예 1), 콤마는 그러한 일반적 구분과 한정은 말할 것도 없고, 도치형을 취한 한정에 앞에도 두루 쓰이는 것이(예 2) 상이한 면이 아닌가 한다.

예 1⁶⁷⁾ :

- Labour Party (*Gr. Brit.*)
 Labour Party (*New Zealand*)
 Bounty (*Ship*)
 Elks (*Fraternal order*)
 Foriedrich Witt (*Firm*)
 New York (*City*)
 New York (*State*)

65. *Ibd.* Rule 46B.

66. *Ibd.*, Appendix V. Punctuation and Diacritics (p. 369—370).

67. *Ibd.*, Rule 65B, 67, 77.

예 2 :

일반적 구분과 한정의 예⁶⁸⁾ :

Society of Engineers, *London*

Alexandria, *Egypt*

Alexandria, *Va.*

Geneva, *N.Y.*

Poland, *Me.*

도치형적 구분과 한정의 예⁶⁹⁾ :

Literature, Comparative

x Comparative literature

Psychology, Pathological

x Pathological psychology

그러나 표목상에서 원괄호와 콤마의 용법은 회연한 구분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기 예 중의

Society of Engineers, *London* 과

Labour Party (*Gt. Brit.*)

는 다같이 콤마나 원괄호의 하나를 택하여 통일해 기입할 수 있으며, 상기 예와는 정반대로 콤마와 원괄호를 서로 뒤바꿔서 기입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AACR에서 상기 예와 같이 정했을 뿐인 것이다.

또 AACR의 예시중⁷⁰⁾

Gomberg (M. Robert) Memorial Committee 와

Malley (Edw.) Company

는 바로 앞에 보인 예1과 예2의 용법을 결합 원괄호의 용법으로 도치형에 쓰인 콤마가, 기입어로 잡은 첫째요소와 도치된 요소 다음의 요

68. *Ibd.*, Rule 66E, 73.

69. Barbara Marietta Westby, ed.,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 9th ed., New York, Wilson, 1965, p. 367.

70.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Rule 67A.

소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 형태를 원괄호로 바뀐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표목상에서의 콤마와 원괄호의 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명기입에 있어, Ranganathan 이 기입요소(entry element, 또는 기입어—entry word라고도 함) 다음에 부차적요소(secondary element)를 부기할 때 콤마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괄호로 구분하고 있음은 이상에서 고찰한 두 구두점의 용법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가 한다.

Ranganathan 은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의 기입요소를 성만으로 잡고 있으므로,⁷¹⁾ 명은 부차적요소가 되어 원괄호로 묶여 그 다음에 표시하게 된다. 한국인명에 대한 그의 논급은 없지만 중국인명과 구조와 용법을 같이하고 있는 점으로 이를 같은 방식으로 기입하고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인명의 형식과 더불어,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괴상한 형식——예 : 이(규호)——이 되고 만다. 필자는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韓中인명은 성만으로 기입어(entry element, or entry word)를 이루게 할 수 없고, 성명 전체를 기입어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⁷²⁾ 바꾸어 말하여 한국인명은 콤마나 원괄호를 성과 명 사이에 삽입시켜 구분지을 성질의 것 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명은 성의 식별성(potency)이 강하므로, 이와는 달리 성만을 기입어로 잡고 명을 원괄호로 묶어 부차적요소로 부기하는 형식도, 입장에 따라 주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괄호는 콤마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본인명은 정하기에 따라 성과 명 사이에 콤마를 찍는 기입형식이 별 모순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71. Ranganathan, *Heading and Canons*, p. 138—139. 씨의 *Classified Catalogue Code*, p. 207—208.

72.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p. 75—80.

나 Ranganthan의 목록이론의 정신에 입각한 필자 나름의 해석이다. 그러나 AACR의 정신으로는,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는 달리, 韓中日의 인명도 직순기입이므로 성명간에 콤마를 찍지 않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AACR에서 그 인명들에 콤마를 찍도록 규정한 것은, 韩中日인이 로마자로 자기 이름을 표시할 경우 그 성과 명의 순위가 일정하지 않은데서 연유한 바를 것이다. 漢字나 한글 또는 가나(假名)로 표시할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목록기입(표목)상에 콤마의 필요는 더욱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韩中日의 동양인명 중 일본인명은, 성의 식별성(potency)이 서양인명과 같이 완전히 있는 점으로 해서, 성과 명사이를 원활화 또는 콤마로 구분하는 기입형식과 그러한 구두점을 취하지 않는 기입 형식의 두방식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양론(兩論)이 있을 수 있어도, 韩中인명은 도치적 기입도 아니며, 성의 식별성(potency)도 없는 점으로 해서, 성과 명 사이를 팔호나 콤마 같은 구두점에 의해 구분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표목의 형식을 로마자가 아니고 한글로 기입할 경우는 더욱 허용할 수 없는 형식인 것이다.

우리 인명의 성명간에 그러한 구두점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란, 표시된 그 인명의 구조가 성·명순이 아니고, “페티金”식으로 명·성의 순으로 되어 있는 예명(藝名) 등을 성·명순으로 도치하여 기입할 경우에 한하여 있을 수 있는 형식인 것이다.

| | | |
|-------------|----|-------------|
| 예 : 김, 페티 | 또는 | 김 페티 |
| x 페티 김 | | x 페티김 |
| x 김 페티 | | x 김, 페티 |
| 김, 리차드 E. | 또는 | 김 은국(金恩國) |
| x 김은국(金恩國) | | x 김, 리차드 E. |
| x 김, 리차드 E. | | x 김, 리차드 E. |
| x 김 리차드 | | x 김 리차드 |

「韓國目錄規則」을 그렇게 불합리하게 규제한 張一世씨는 원래가 목록에서의 구두점의 사용법과 그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심을 느끼게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때 그의 저서에서

家庭教師, 石坂洋次郎, 著, 李時哲, 譯。

식인 저자표시의 용례를 보이고,⁷³⁾ 자기류의 모순된 구두점의 용법을 「韓國目錄規則」(1964년 초판)에 까지 도입시켜 우리나라 목록계를 혼란케 한 사실과,⁷⁴⁾ 최근에 「韓國目錄規則解說」(1968)의 ‘제 V 장 카드의 배열’에서 주표목과 부표목이 갖춰진 기입형식에서 주표목 다음에 찍힌 은점(period)을 아래와 같이 무시하여 배열해 놓은 예시⁷⁵⁾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예 : 한국. 문교부. 평수국 (저자)

한국문학 (주제)

한국역사학회 (저자)

한국의 풍토 (서명)

한국. 체신부 (저자)

한국. 체신부 (주제)

한국. 현법

위와 같은 배열순의 예시는, 그후 수년간 “계속 연구 검토한 것을 정리하여” 다시 발표한 논문⁷⁶⁾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張씨가 지금까지도 그 배열법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증좌인 것이다.

목록법의 기초과정만 밟은 자이면 왜 주표목 다음에 그러한 구두점을 찍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부표목을 주표목에 떨린 일종의 세목으로 보고 함께 유취시켜 배열코자 하는 수단에서 온

73. 張一世, 校園圖書館運營指針, p. 175-204(상기 예는 p. 185에서 인용한 것임)

74. 이재철,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p. 83-84(특히 주 46 참조).

75.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 258.

76. 張一世, ”우리말로 표시된 카아드목록 배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 창립10주년기념논문집, 서울, 1970년 11월, p. 115-139.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기입의 배열순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온점(period)을 찍는 것이다.

한국. 문교부. 편수국

한국. 체신부

한국. 체신부

한국. 현법

한국문화

한국역사학회

한국의 풍토

張一世씨는 상례와 같이 구두점을 찍어놓고도 어떤 착각과 혼돈에서 배열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아마 표목에서의 구두점의 기능을 잘 모르는데서 온 과오인줄 안다. 죽어식이 아니고 음절순이라 할지라도 표목상에 온점, 콤마, 대쉬, 사선, 팔호 등의 구두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삼아 구두점단위로 배열해야 된다는 것을 張씨는 알아야 할 것이다. 張씨가 만들어 놓은 배열규칙의 앞으로의 시정을 위해 그가 음절순배열이라는 명목아래 잘못 배열해 놓은 예시를 몇개 더 지적해 둔다.

예 :

張一世가 잘못 배열한 기입순위 필자가 바로 잡은 배열순

| | | |
|---------------------|------|-------|
| 미술공부 ⁷⁷⁾ | (서명) | 미술—교육 |
|---------------------|------|-------|

| | | |
|-------|-------|-------|
| 미술—교육 | (주제명) | 미술／한국 |
|-------|-------|-------|

| | | |
|------------|------|------|
| 미술교육은 어떻게? | (서명) | 미술공부 |
|------------|------|------|

| | | |
|----------|-----|------------|
| 미술대학 이야기 | (〃) | 미술교육은 어떻게? |
|----------|-----|------------|

| | | |
|-------|-------|----------|
| 미술／한국 | (주제명) | 미술대학 이야기 |
|-------|-------|----------|

| | | |
|------------------------|------|---------|
| 와싱턴, 조지 ⁷⁸⁾ | (인명) | 와싱턴, 조지 |
|------------------------|------|---------|

| | | |
|---------|-------|---------|
| 와싱턴—도서관 | (주제명) | 와싱턴—도서관 |
|---------|-------|---------|

77. *Ibd.*, p. 126.

78. *Ibd.*, p. 125.

| | | |
|---------|-------|---------|
| 와싱턴의 인상 | (서명) | 와싱턴—통계 |
| 와싱턴—통계 | (주제명) | 와싱턴의 인상 |

| | |
|-------------------|-------|
| 건축 ⁷⁹⁾ | 건축 |
| 건축가 | 건축—건적 |
| 건축—건적 | 건축／고대 |
| 건축—고대 | 건축—구조 |
| 건축—구조 | 건축—동양 |
| 건축—동양 | 건축／중세 |
| 건축제도 | 건축가 |
| 건축／중세 | 건축제도 |

| | |
|-------------------|-------------|
| 한국 ⁸⁰⁾ | 한국 |
| 한국문학 | 한국—역사—연표 |
| 한국—역사—연표 | 한국—역사—상고시대 |
| 한국—역사—상고시대 | 한국—역사—고구려시대 |
| 한국—역사—고구려시대 | 한국문학 |
| 한국전쟁 | 한국전쟁 |

| | |
|--------------------|---------|
| 이태리 ⁸¹⁾ | 이태리 |
| 이태리의 풍토 | 이태리문학 |
| 이태리문학, | 이태리의 풍토 |

표제 표목만 예외로 하고, 그밖의 모든 표목은 구두점을 단위로 해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⁸²⁾ 단어 단위나 음절 단위이냐의 문제는 그 한

79. *Ibd.*, p. 135.

80. *Ibd.*, p. 135.

81.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p. 253.

8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 Chicago, 1942, Rule 8. Library of Congress (U.S.) *Filing Rules for the Dictionary Catalogs of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1956, p. 130—131. 張一世, “우리 말로 표기된 카드목록 배열에 관한 연구”, p. 120.

계내에서의 일이다. 바꾸어 말하여 단어단위이전 음절절단위이전 막론하고 우선은 구두점을 기준으로 삼아 배열해야 되는 것이다.⁸³⁾ 기입에서, 표제의 경우를 빼놓고, 인명과 단체명과 주체명에서 구두점을 찍음을 그려한 배열의 기준을 삽기 위한 필요에서 연유한 것이다. 張一世씨는 ALA이나 LC의 배열규칙에서와 같이, 구두점의 고려를 표제(서명)의 배열시에만 무시하기로 규정해 놓고서도,⁸⁴⁾ 바꾸어 말하여, 표제이외의 기입에서는 배열의 기준으로 삼기로 정해 놓고서도, 인명 기입내의 콤마만 배열의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뿐,

예 : 남, 정우⁸⁵⁾

남궁, 봉

그외의 기입에서의 구두점, 즉 단체명표목 또는 주체명표목에서의 온점, 대쉬, 사선, 등의 구두점은 이를 무시하여 배열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목 또는 기입이란 배열의 기준이를 말함인데, 바꾸어 말하여 표목상의 모든 요소는 구두점을 포함해서 배열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⁸⁶⁾ 배열에서 두시될 구두점을 왜 목록법이나 주체명법에서 찍어주도록 규제하고 있단 말인가. 張씨는 그 구두점의 의의와 기능을 알아야 되며, 스스로 약정해 놓은 구두점 고려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목록의 기입에서, 張씨가, 韓中인명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어 표목형식을 잡도록 규제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구두점 용법에 대한 착각과 혼돈에서 귀결한 부산물이라고 해서 과히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韓中인명도 성과 명을 각 한 단위로 보고 배열하기 위하여 성명간에

83. 이재철, 目錄카아드配列法, (1962年 圖書館實務講習會專門班敎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2. 油印物, p. 3.

84. 張一世, “우리말로 표기된 카아드목록 배열에 관한 연구”, p. 120.

85. *Ibd.*, p. 121-123.

86. 표제기입의 경우는 예외임. 전술한 바와 같이 표제내의 구두점은 배열에서 무시함.

콤마를 찍도록 한 모양인데,⁸⁷⁾ 그러한 단어 단위의 배열은 반드시 콤마를 찍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

남 만수

남 흥우

남궁 각

남궁 억

이 광수

이 회주

이 노우에

이 시카와

어색하고 불합리한 콤마를 굳이 안찍어도 상례와 같이 띄어쓰기의 단어 순 배열에 의해 한글 자형상 동일한 성(기입요소)을 유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띄어쓰기에 의한 단어 순 배열이 콤마에 의한 것 보다 일반인이 찾는 순위와 좀더 일치한 것이 아닐까 한다.

예 1 : A: 구두점단위의 순위 B: 띄어쓰기에 의한 단어 단위의 순위

남, 만수

남⁸⁸⁾

남, 흥우

남 만수

남⁸⁸⁾

남 흥우

남궁, 각

남궁 각

남궁, 억

남궁 억

87. 張一世, 우리말로 표기된 “카아드목록배열에 관한 연구”, p. 121.

中村高雄씨도 그의 「圖書館資料組織論」(東京, 理想社, 昭和44[1969])에서 성과 명 사이에 콤마 찍는 문제에 대해 脚註에서 약간 비춰기를, “外國人名의 표목의 경우는 콤마는 普通形을 轉置시킨 것이라는 뜻도 있으나, 日本人名의 경우는 배열의 順位상의 약속임에 불과하다”라고, 성명간에 콤마 찍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88. 만약 “남”이 저자명으로서의 성이 아니고, 지명, 주제명 또는 표제(서명)일 때의 배열 순위임.

| | | |
|-------|------------------|------------------|
| 예 2 : | 남 ⁸⁹⁾ | 남 ⁸⁹⁾ |
| | 남, 만수 | 남 ⁸⁸⁾ |
| | 남, 흥우 | 남 만수 |
| | 남 ⁸⁸⁾ | 남 흥우 |
| | 남궁, 각 | 남궁 각 |
| | 남궁, 역 | 남궁 역 |

필자는 목록의 전체기입을 단어단위로 배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반대이다. 그 이유는, 우리 말의 띄어쓰기법(word division)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⁹⁰⁾ 심지어 국정 국어교과서마저 띄어쓰기인 한 난맥상을 이루고 있”을⁹¹⁾ 정도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띄어쓰기법을 취택하거나 또는 이를 제정해 놓아도 그 방식을 하나의 오류없이 염격히 따라 기입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단어순 배열의 경우, 일반이 과연 그 방식에 쫓아 겸색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그 띄어쓰기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일반인이 찾는 위치와는 판이한 자리에 끊혀 영영 이용되지 않을 카드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나다순목록에서 단어순배열법을 채택할 단계에 오르려면, 적어도 표준적인 국어사전으로 이러한 배열법을 채용한 것이 수종 나와 상당기일의 사용과정을 겪고 겸색상의 능률면을 인정 받고 난 이후라야 온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인명기입에 대한 단어순 배열은 굳이 반대하지 아니한다. 인명기입에 대해서는 음절순과 더불어 단어순배열도 다같이 허용하여, 그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택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인명에 한해서 단어순배열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는 성명간의 단어구분은 비교적 명확한 것이

89. 만약 “남” 하나는 주88에서와 같이 지명, 주제명 또는 표제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의 “남”은 성일 경우의 순위.

90. 김홍기, 글자운용에 있어서 단어식별에 대한 연구——띄어쓰기를 중심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0, p. 106 (석사학위 논문)

91. *Ibd.*, p. 101.

며, 그러한 인명의 단어순배열법은 전화번호부 같은데서 이미 그 실례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이 어느정도 익히고 있는 배열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명기입을 별도로 배열하여 저자목록을 형성치 아니하고, 표제기입과(또는) 주제명기입과 혼합하여 사전체목록 또는 저자·표제목록을 형성을 할 경우는, 인명은 단어순으로 검색케 하고, 표제와(또는) 주제명은 음절순으로 검색케 하는데서 오는 혼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목록함 안의 표지카드(guide card)를 풍족히 마련해주는 것과 목록함 밖의 표지어를 치밀하게 조직해주는 일이 진요하다고 본다.

표목간의 통합성이 전혀 없는 카드목록에서 韓中인명에 대해, 성명간에 콤마를 찍어 구분하든 띄어쓰기로 구분하든 간에, 성단위의 배열을 취한다는 것이 과연 소기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러한 염려를 하는 근거는, 張一世씨가 사서과장직에 앉아 직접 관장해서 평성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에서 마저도 韓中 인명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어 놓고 정확한 배열을 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동 도서관은 열람용 카드목록에서의 오류는 말할 나위도 없고 나라서독인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의 서책목록에서 마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⁹²⁾ : 한, 태우

한, 태홍

한국문인협회

한국신시60년기념사업회

한국인물소설전집

한, 운사

92.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서울, 1968, p. 40—41, 및 권박의 ‘저자색인’(p. 81—93). 동 목록의 1967년이후분의 기입형식과 배열은 다 이 방식임.

| | |
|----------|------------|
| 방, 기환 | 신, 지식 |
| 방송국예술연구회 | 신진사 |
| 방, 영웅 | 신, 태삼 |
| 서, 대세 | 이, 기을 |
| 서던, 테리 | 이, 길상 |
| 서라벌예술대학 | 이노우에, 신부로오 |
| 서, 무송 | 이노우에, 야스시 |
| | 이, 능화 |

즉 성단위의 배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성명간에 좀마까지 찍어 놓고도 이를 무시한 배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張씨가 배열규칙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단체명표목과 주체명표목의 배열시 온점(period)과 대쉬 또는 사선등의 구두점을 무시하고 배열한 예시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오류이다. 이와 똑같은 배열의 오류는 張씨가 사서장직으로 있던 梨大도서관 열람용 목록에서도 볼 수 있다.

10년간의 대학 교편경험이 있는 목록학 강사이며 수십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목록실무책임자가 직접 지도·판장한 도서관목록이 이러할진대, 딴 도서관에서의 배열의 혼돈과 오류도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부분적인 오류가 아니고 목록 전체를 통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은, 韓中인명의 표목에 대한 단어순 배열이 시기상조이며 실용적이 못됨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사실은 韩中인명을, 배열자나 검색자가 다같이 성과 명을 각 단위(즉 두단위)로 보지 아니하고, 성명을 한 단위(한명어리)로 보고 식별하는 경향이 더 짙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韩中인명의 단어순배열은, 그 인명의 단어구분(띄어쓰기)자체가 모호하여⁹³⁾ 이론적으로도 뒷받침이 박약할 뿐더러, 설혹 그

93. 韩中인명의 단어수를 몇개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줄 안다.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제63항)에서는 두 단어로 보고 있으나, 최현배 선상은 그의 「한글 바로적기 공부」(國文正字法研究)(p. 130)에서 그것을 두 날칼로

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韓中인명에 대한 단어순 배열은 표목들의 통합성이 없는 카드목록에서는 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합성이 있는 서책목록에서는 다분히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 성명간에 콤마를 찍을 필요는 없다. 카드목록에서 굳이 이러한 성 단위 배열법을 채용코자 할 때는, 전제로 지식수준이 높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에 젖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도서관에서는 배열과 검색상 혼란만 가져올 뿐 자칫하면 역효과를 볼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張一世씨와 李春熙씨는 각각 자기 저자기호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韩中인명의 성명간에 콤마를 찍는 기입의 형식론을 저바리거나, 그와는 반대로 동 목록의 이론을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저자기호표를 폐기해야 되는 딜림에 빠져 있다 하겠다.

V. 된소리의 배열방식을 달리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점

목록에서의 기입(카드)의 배열순위와 서가상의 도서의 배열순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자기호표에서 고려되어 있어야 할 점의 또하나는 한글의 된소리의 배열문제를 들 수 있다.

된소리의 배열방식에는,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여 함께 배열하는 방식(예 A, 이하 가나다순이라 칭함), 이를 독립된 자모로 보고 별도로 배열하는 「가…겅, 까…꽁, 나…횡」순(예B, 이하 가까나순이라

볼수도 있고, 성, 한글, 제이름의 요소로 이루어졌으므로, 석자(성 한자 명두자)로 된 인명의 경우는 각개인의 주관에 따라 세날말로도 볼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白頭山이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백두 산”과 같이 두 단어로 예시되어 있는 것을 현재의 일반적인 용법은 “백두산”과 같이 한 명어리로 보는 경향이 더 짙은데, 만약 그런 용법이 융납된다면 「李載喆」이란 이름도 그 보는 주관과 각도에 따라 세단어, 두 단어, 한단어로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점이다. 韩中인명을 한글로 쓰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각 요소를 띠어쓰지 아니하고 붙여쓰는 경향이 더 많음을 본다. (필자의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p. 71의 脚註15)

칭함), 또는 「가…횡, 까…횡」순(예C, 이하 가하까순이라 칭함)의 방식, 그리고 이들 방식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가…가횡, 까…까횡, 각…각횡, 각…각횡…기…기횡, 끼…끼횡, 나…횡」순(예D)등의 배열 방식이 있다.

| 예 : | <u>A(가나다순)</u> | <u>B(가까나순)</u> | <u>C(가하까순)</u> | <u>D</u> |
|-----|----------------|----------------|----------------|----------|
| 가격 | 가격 | 가격 | 가격 | |
| 가치 | 가치 | 가치 | 가치 | |
| 까치 | 각시 | 각시 | 끼치 | |
| 깍두기 | 공항 | 공항 | 각시 | |
| 각시 | 깊이 | 깊이 | 깍두기 | |
| 꽁치 | 까치 | 나비 | 꽁항 | |
| 꽁항 | 깍두기 | 힌두교 | 꽁치 | |
| 깊이 | 꽁치 | 까치 | 깊이 | |
| 나비 | 나비 | 깍두기 | 나비 | |
| 첨질 | 첨질 | 꽁치 | 첨질 | |
| 힌두교 | 힌두교 | 첨질 | 힌두교 | |

A형(가나다순)의 배열순을 취하고 있는 사전으로는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57)과, 신기철·신용철씨의 「표준국어사전」(1958)과, 학원사의 「世界百科大事典」(1966-67)등이 있고, B형(가까나순)의 사전으로는 이윤재씨의 「표준조선말사전」(1947)과, 한글학회의 「중사전」(1958), 「새한글사전」(1965) 및 「소사전」(1960)과, 이희승씨의 「국어대사전」(1961)등이 있고, C형(가하까순)의 사전으로는 「조로사전」(194-), 「한일일한종합사전」(1961)이 있으며, D형의 사전으로는 문세영씨의 朝鮮語辭典(1939)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C형과 D형의 두 방식은 사전류 배열에서 자연히 도태해 버리고, 현재로는 A형(가나다순)과 B형(가까나순)만이 남아 한글 배열법의 쟁벽을 이루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다같이 평찬해 낸 큰사전과 새한글사전 사이에 된소리

의 배열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곤난한 일이나, 새한글사전(1965)이 큰사전(1947)보다 나중에 나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동 학회의 말수배열정책이 A형(가나다순)에서 B형(가까나순)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 사실 음성학적으로 “ㄱ”과 “ㅋ”과의 차이는 조음위치(調音位置)는 같되 음가는 판이한 것이다. 그 차이의 정도는 “ㄱ”과 “ㅋ”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ㅋ”은 형태적으로 “ㄱ”을 겹쳐서 적었을 뿐, 음성학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음가를 가지며, 별개의 부호(문자)로 표시할 수도 있는 별개의 음운인 것이다. 그것은 로마자 W가 형태적으로는 U의 古形인 V의 중복형이지만——영어명으로는 명칭적으로도/dʌbl̩-ju:/(<double U>)라 불려 그 중복관계를 표시하고 있음——음운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별개인 것과 같다.

따라서 음성적면에서는 B형(가까나순)과 C형(가하까순)의 배열방식이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실용적인 면 때문에 A형(가나다순)을 지지한다.⁹⁴⁾ 그 이유는 “鳥”에 대한 표준어가 “가마귀”이든 “까마귀”이든, 또 외래어 “bus”에 대한 표기가 “버스”이든 “빠스”이든 상관없이 한자리에서 겹색되는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가까나순의 배열을 취하고 있는 이희승씨의 「국어대사전」으로는 그 말을 “빠스”란 표기로 찾을 때 겹색되지 않는 불편이 있다. 金敏洙씨⁹⁵⁾와 徐廷國⁹⁶⁾씨도 B형(가까나순)의 이 불편을 들어 A형(가나다순)을 지지하고 있다. 徐廷國씨가 그의 논문에서 든 예를 참고하여 가까나순과 가하까순의 불편한 경우를 좀더 예시 해 본다.

94. 이재철, “신문기사색인법의 이론과 실제” p. 97—98.

95. 金敏洙, 新國語學, 서울, 一潮閣, 1964. p. 372.

96. 徐廷國, 한글사전의 말수차례에 대하여, 語文論集(高大國語國文學研究會), 第1輯(1968年12月號), p.212, 및 씨의 「國語基本語彙의 研究」, 서울, 高麗大大學院, 1968. p. 22. (석사학위논문)

| | | | | |
|-----|------|------|------|------|
| 예 : | 문자 | 문짜 | 꼬박 | 꼬빡 |
| | 도량 | 또량 | 고깔 | 꼬깔 |
| | 둑 | 뚝 | 꼭둑각시 | 꼭뚝각시 |
| | 닦다 | 깎다 | 일군 | 일꾼 |
| | 차르다 | 짜르다 | 장군 | 장꾼 |
| | 널다랗다 | 널따랗다 | 직연 | 꺽연 |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의 「주제명표목표」(1961)와 「東亞日報索引」 제1집과 제2집(모두 1970년刊)은 모두 A형(가나다순)을 취하였다. 1958년에 발표한 「동서저자기호표」(제2표)도 이 배열법을 전제로 해서 구성하였다. 도서관목록의 배열은 모두 이 방식으로 통일하였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B형과 C형의 불편을 덜며 많은 참조카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A형의 방식은 한국 도서목록계의 전통적인 배열법이기도 한 것이다. 초창기의 도서관학자 朴奉石씨와 高在昶씨도 다같이 이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⁹⁷⁾ 張一世표와 李春熙표가 이 배열법을 따른 것은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B형(가까나순)의 배열법을 채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張一世표와 李春熙표는 그 순위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막히고 만다. B형(가까나순)을 취하는 도서관으로, “Camu”를 “까뮈”로 표기하고(또는 표제기입한 “까치”란 정간물이 있다 가정하고), “徳川”를 “도쿠가와”로, “池田”를 “이케다”로 각각 기입한 입장에서, 張一世표와 李春熙표에 의해 저자기호를 매겨보면, 동 표들의 부적당함을 곧 알 수 있다. 아래 예에서 보듯이 동 표들은 B형과 C형의 배열법을 취할 경우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필자의 저자기호표의 제2표(1958)도 전술한 바와 같이 A형(가나다순)의 배열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에 난점이 있다.

97. 朴奉石, 朝鮮東書編目規則, 서울, 國立圖書館, 1948. 205條, 高在昶, 韓銀圖書編目法, 서울, 韓國銀行調查部, 4287[1954] p. 453.

예 : 張一世 표

김 — 999

나가 11

도기아 66

다 67

이길아 682

이나 683

李春熙 표

정 999

나 111

이기, ○ 618

이나 619

도기자와 279

도노무라 281

긴 하다. 그러나 보통시에 저자기호로 안쓰이는 숫자“0”을 다음과 같이
이 부가하여 조절해 쓰면 거뜬히 해결이 된다.⁹⁸⁾

예 :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1 20 22 230 4 50 5 60 7 80

사용례 : 도꾸가와

도 207

이끼다

이 203

이 문제를 좀더 완벽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동표의 제2판⁹⁹⁾에서
B형(가까나순) 배열의 전용으로 이른바 “까표”(제4표와 제6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A형(가나다순)식 “가표”(제3표와 제5표)와 더불어 필자표
의 쌍벽을 이루게 하여 그 도서관의 목록 배열정책에 쫓아 선택해 쓰
도록 마련한 것이다.

VI. 독법 또는 표기를 달리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점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아직 통일을 보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98. 数字“0”은 로마자 O(또는 한글 ○)와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자기호로
안쓰이고 있다. 그러나 악바지에 가서는 数字 0을 사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경우
가 나온다. 예로 저자기호 22와 221 사이에 길 저자가 들어왔을 경우는 부득이 220
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数字 0의 사용은 Cutter 표 사용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Explanation of the Cutter-Sanborn Author-Marks Three-figure Tables*,
Rule 3 (p.4)). 편소리 “ㄱ”에 대해 “20”과 같이 기호를 줄은 Cutter의 그러한 숫자
0의 사용보다는 훨씬 혼동성이 없다고 본다. 모음기호를 부가하면 “도207”과 같이
되어 영(0)이 형태적인 면에서 영(0)이외의 숫자와 숫자사이에 끼이기 때문이다.
99. 1970년 10월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교재용으로 표(제3표부터 제6표까지)만 우
선 발표하였음. 1971년 이론본에 사용법을 붙여 정식 출판할 예정임)

로, 외국어 또는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도, 국가체정의 통일안이 있는 데도 그의 합당성에 대한 인정을 못받아서임엔지, 사실상의 통일을 아직 못보고 있는 현상이다.

국제음성자모(IPA) 또는 외국문자의 한글번자의 불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漢字로 이루어진 중국 및 일본의 인명과 지명의 독법에 있어서도 원음으로 읽는 법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 법이 있어 적지않은 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단체명(기관명)과 서명까지 곁들여서 생각하면 동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기관명 기입의 주표목이 흔히 되는 국명의 호칭단 하더라도, France를 불란서 또는 프랑스라 부르고, Canada를 가나다(加那多), 카나다, 캐나다, 또는 캐너더 등과 같이 여러가지로 부르고 있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그중에서 어느 독법 또는 어느 표기법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느사회, 어느분야 보다도 도서관 목록분야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목록자 이상으로 절실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자는 저자기호표를 열거식으로 만들려는 편찬자일 것이다. 목록자는 그중에서 한 방식(system)만 채택하면 되지만, 열거식 저자기호표의 편찬자는 그 모든 경우를 고려에 넣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방식에만 의존해서 표를 만들 경우, 다른 방식의 독법 또는 표기법을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못쓰는 표가 되고 만다. 이점에 대해서는 張一世씨도 통일적 “표기법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三國에 공용되는 저자기호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다”¹⁰⁰⁾라고 시인한 바 있다. 여기서 “저자기호표”란 열거식 표를 말함이며, “三國”이란 韓中日을 가르키고 있는데, 張씨는 韓中日의 “三國”이란 말 대신 “세계” 또는 “국제”란 말로 표현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동서 전체는 말할 나위도 없고 한국도서만 하더라도 번역서 및 외국인물에 관한 저작이 있어, 전세계의 인명, 단체명, 및 표제 등이 모두 저자기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독법과 표기법이 확고히

100. 張一世, “張一世式韓國人著者記號表의 構成原理”, 도협월보, 제3권, p. 126.

통일되기 전에는 저자기호표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해 놓고도, 張씨는 그의 통일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표를 두개씩이나 만들어내었다. 결과적으로 제1표(1961)는 출간되자마자 곧 무용지물이 되어 폐기되고 말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2표(1964)도 그의 독법과 표기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 일이다. 그 실제로 일본인명 “織田”에 대한 저자기호를 들 수 있다. “織田”를 “오다”로 읽을 경우에는 張一世표와 李春熙표 다같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직전”으로 읽는 곳에서는 동 표들은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예 : 張 一 世 표

오니시 368

다 369

다니가 371

지파아 962

직킹정 964

진가 966

李 春 熙 표

오노우에 284

오다 285

오다가 286

오다게 287

지즈가 587

지·홍 588

진 589

이런 현상은 일본인명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일본음으로 읽는 경우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예로 “徳川”란 일본성을 문교부식으로 “토쿠가와”라고 읽는 도서관에서는 李春熙표는 그 성에 대한 기입어를 “도구가와”, “도구가와, ト”와 같이 두개씩이나 마련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막히고 만다. 張一世표는 이 경우 두가지 표기법을 병기하고 있어 일견 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해주고 있는 양 보이나, 채용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중의 하나만 필요한 것이므로 또다른 번호는 영영 유휴번호가 되고 말아 기호분포의 균형을 잃게 된다.

예 : 張 一 世 표

대가 51

李 春 熙 표

대 242

| | | | |
|-----|----|---------|-----|
| 한 | 52 | 태구지 | 243 |
| 데가즈 | 53 | | |
| | | 도구가와 | 268 |
| 도구가 | 64 | 도구가와, 入 | 269 |
| 구겐 | 65 | 도구나가 | 271 |
| 기아 | 66 | : | |
| 다 | 67 | 도기와즈 | 279 |
| | | 도노무라 | 281 |
| 토쿠가 | 84 | | |
| 쿠게 | 85 | 탈 | 362 |
| | | 태 | 363 |
| | | 파 | 364 |

이런 모순성은 일본과 중국 인명의 표기법을 달리하는데서 일어나는 문제만이 아니고, 서양어 표기의 경우에도 똑같이 부닥치는 문제이다. 예로, “Schweitzer”에 대한 기입어가 “시바이찌”, “쉬바이처”, “슈바이처”등과 같이 사전에 따라 그 표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만약 저자기호표에서 취하고 있는 표기가, 그 도서관의 목록에서 취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그 표는 이미 적합한 것이 못되어 균형을 잃은 것이 되고 만다. 또 이것은 표기법의 체계를 완전히 달리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만도 아니다. 동일한 체계의 표기법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도 때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문교부의 표기법에 의하더라도, Hardy 는 “하아디”와 “하디”; Jonson 은 “존슨”, “존슨”, “잔슨”, “잔슨”; Buck 는 “벅” 또는 “버크”; Roosevelt [róuzəvəlt, rəuzevəlt, ru:svelt]는 “로우저벨트”, “러우저벨트”, “루우스벨트”, “루스벨트”가 다같이 정서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다시 자기 도서관 나름의 정책을 세워 일관성 있게 표기해 나갈 수 있다. 장음 표시는 언제나 생략한다든지 (또는 표시한다든지), 영미간의 발음이 서

로 다른 때는 영국발음에 쫓는다든지, 또는 인명·지명의 경우는 국적 또는 소재국의 발음을 쫓는다든지, 또는 표준적 사전하나를 택해 놓고 그 사전 기입어의 제일 처음에 표시된 발음을 쫓기로 한다든지 하여 표기의 통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¹⁰¹⁾

張一世표는 그 기입어의 채기에 있어 이러한 원칙의 확립과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 실례를 아래에 들어둔다.

예 :

| | | |
|--------|------|-----|
| 장음관계 : | 로버트 | 조오지 |
| | 마샬 | 하아니 |
| | 루즈벨 | 후우버 |
| | 루즈벨아 | |

기타 : 표상의 기입어 짐작되는 서양인명

| | |
|-----|--------------------------------|
| 잭슨 | Jackson [dʒæksn] |
| 존슨 | Johnson [dʒónsn/dʒánsn] |
| 리차드 | Richard [rítʃəd] |
| 체스터 | Chéster [tʃéstə] |
| 챔버랜 | Chamberlain [tʃéimbəlin] |
| 쉐스피 | Shakespear [ʃéikspíə] |
| 프라이 | Fry [frái] |
| 프랭크 | Frank [fræŋk/fra:gk] |
| 맥스웰 | Maxwell [mækswel/mákswəl] |
| 페트라 | Petrarch [pétra:k/pítra:k] |
| 루즈벨 | Roosevelt [rəuzəvelt/ru:svelt/ |
| | rouzəvelt] |

루즈벨
} 루즈벨아

상기 예의 기입어중에는, 전술한 원칙의 결정과 일관성문제는 고사

101. 목록에서는 체기한 발음과 저버린 발음간에 너무 차가 나서 검색에 지장을 가져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참조로서 역절시켜줌이 좋다.

하고, 그 표기법이 문교부안도 아니요, 조선어학회안도 아니며, 그렇다고 관용적인 표기도 아닌 것이 태반을 찾이하고 있다. 張씨는 자신의 말로 “표준적인 표기방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항상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⁰²⁾고 강조하면서도 자기자신은 그 철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긴 완전무결한 표기법이 있어 하나의 오류없이 열거해준다 치더라도, 동서·양서를 주제별로 혼가하는 도서관에서 번역서와 원서를 나란히 놓기 위해 서양인명을 Cutter 표나 LC 표 등에 의해 저자기호를 매기는 도서관에서는 동서저자기호표에 서양인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전체적인 면에서 기호배정의 균형과 합리성을 잃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열거식표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점들을 분석적 합성식 표인 필자의 저자기호표는 아래와 같이 가볍게 해결해 준다.

예 :

| | <u>목록의 기입어</u> | <u>저자기호¹⁰³⁾</u> |
|-------------|----------------|----------------------------|
| 중국인 : 胡適 | 호적 | 호74 |
| | 후스 | 후57 |
| 일본인 : 織田 | 오다 | 오22 |
| | 직전 | 직74 |
| 德川 | 도꾸가와 | 도16 |
| | 토쿠가와 | 토87 |
| | 덕천 | 덕83 |
| 서양인 : Curie | 퀴리 | 퀴29 |
| | 퀴리 | 퀴29 |
| | 큐리 | 큐29 |
| | 꾸리 | 꾸29 |

102.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說’, p. 107.

103. 필자의 동서저자기호표 제5표에 의한.

| | | |
|------------|-------|-----|
| Schweitzer | 시바이쩌 | 시42 |
| | 쉬바이처 | 쉬42 |
| | 슈바이처 | 슈42 |
| Roosevelt | 로우저벨트 | 로66 |
| | 루우스벨트 | 루66 |
| | 루스벨트 | 루57 |
| | 러우저벨트 | 러66 |

즉 필자의 저자기호법은, 목록기입에서 어느 방식의 독법과 표기법으로 표목을 잡더라도 거기에 즉응(即應)해서 자유자재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다.

VII. 결 론

현대 기호표의 구조이론은 대체로 열거식 방식(enumerative system)보다 분석적 합성식 방식(analytico-synthetic system)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에 있다. 이 합성식 방식은 1957년 영국의 Dorking에서 열렸던 「국제분류학연구회」(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에서도 6개 중요 합의사항(main points of agreement)중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채택하여, 전세계 분류학계에 널리 권장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동 분석적 합성식 방식의 표 구조론이 어느 경우이고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이론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마는, 한글을 기입어(표목)의 문자로 잡아 이를 기계적으로 배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자기호법으로는 이보다 더한 이상적인 구조론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글의 특성에 맞기 때문이다. 한글은 음절철로 적는 문자이 되, 그 字素(字母)가 자음과 모음의 단음문자로 분해되어 있어 기호로의 기계적인 분석(analize)이 가능하며, 그의 음절구조가 반드시 자음

＋모음, 또는 자음＋모음＋자음의 형식(pattern)으로 되어 있어, 즉 언제나 음절의 첫 요소는 자음, 두번째 요소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첫부분의 자음과 모음을 숫자기호화하여 이를 합성(synthesize)하면 열거식 표의 두자리표와 똑같은 것이 되어, 굳이 표상에 수천 수만의 기입어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고도, 또 열거식 표의 경우와 같이 표를 일일히 들춰서 찾지 않아도 그 구분과 기호매김이 가능하며; 두째, 우리나라 목록제는 아직 기입의 형식,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독법, 외국어의 표기법(변자법), 배열법(음절순과 단어순문제, “가나다순”이나 “가까나순”이냐 하는 된소리의 배열문제, 등) 문제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설혹 어느 한 방식으로 임시 통일시켜도 언젠가는 변동될 가능성성이 잠재하고 있어, 다시 말하여 유동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저자기호법도 그의 변동에 따라 즉응할 수 있는 용통성(flexibility)이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열거식 저자기호표인 高在昶, 李春熙, 張一世표는 각각 상술한 문제 중 어느 한 방식(practice)만 변동되어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전면적인 개편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저자기호법은 목록에서 상기한 방식중 어느 방식을 채용하여도 거기에 즉응(即應)해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다.

張一世씨는 “이상적인 저자기호표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고 어느나라의 저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규모의 도서관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⁴⁾ 그런데 張씨 자신이 만든 표를 포함한 모든 열거식 저자기호표들은 그 어느 것도 이 언어——독법과 표기——의 장벽을 뚫지 못하였으며, 수록하는 저자의 국적과 시대가 제한되어 있으며——미지의 나라, 미래의 저자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인명만을 표 구성을 위한 빈도통계의 대상으로 삼고 단체명, 관할구명, 표제 등을 고려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호배정의

104. 張一世, “張一世式韓國人著者記號表의 構成原理”, 도협월보, 제3권, p. 125.

균형과 합리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열거식 표로는 속명적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분석적 합성식표만이 이 장벽을 뚫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저자기호법에 대해 그의 간편성과 기억성과 능률성은 인정하지마는, 그의 구분성(개별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문제 삼는 이가 있다. 張一世씨는 필자의 표를 가르켜 “장서수가 적은 도서관”용 즉 소도서관용 밖에 안된다고 평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재래의 어느 저자기호표 보다도 포용성이 넓고 개별성이 강하다. 필자의 표는 문자 한자(一字)에 기본숫자기호를 합성한 것만으로도, 최대 15萬만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Cutter-Sanborn 표 보다 12배, LC 저자기호법보다는 870배, 張一世표보다는 35배, 李春熙표보다는 41배 더 개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張씨가 이상적인 표의 마지막 조건으로든 “어떠한 규모의 도서관에도 사용할 수 있는 표라야 한다”는 평가기준에 張씨의 표보다 필자의 표가 더 적격하다고 본다. 필자의 표는 張씨가 평하듯 이 소도서관용으로도 적격하며, 본론에서 제시한 통계가 입증하듯이 대도서관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말이다.

Author Notation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Author Table for Korean Libraries

Jai-chul Lee*

〈ABSTRACT〉

As to the structure of author tables for the Korean libraries using the Korean alphabet [Hangul] for filing, no other system is understood more relevant to author notations than the analytico-synthetic system.

The Korean character consists of syllables respectively individual into "consonant+vowel" or "consonant+vowel+consonant," with the first element a consonant and the second a vowel. When these elements are synthesized with figure representation, they make an enumerative two-figure table. Individualizing and assigning, therefore, are done without listing many entries on the table or looking up notations in ready-made enumerative author tables.

We still do not have general agreements in form of entry, reading of the Japanese and Chinese names, transliteration of foreign words, and filing system. What is more, so flexible and hospitable a notation system should be adopted as to meet the anticipated changes. The writer introduces an author notation system that could make 150,000 divisions by combining figures, thus making it possible to endure changes through readjustments. It is considered effective, convenient, and efficacious for individualiz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Yonsei University.